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관련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관련



- 이 책자는 2017년도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포함)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 공무원에게 제한 · 금지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 누구에게나 금지되는 행위도 일부 게재하였습니다.
-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포함)은 이 책자를 준거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수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의 표기
 - 「대한민국 헌법」 ⇒ 「헌법」으로 표기
 - 「공직선거법」 ⇒ 「법」으로 표기
 - 「공직선거관리규칙」 ⇒ 「규칙」으로 표기

Contents

I.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	1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2
가. 도입 배경	2
나. 규정 내용	3
다. 관련 사례	5
라. 별 칙	11
2.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법 § 60)	12
가. 도입 배경	13
나. 규정 내용	13
다. 선거운동 판단기준	16
라. 관련 사례	18
마. 별 칙	21
3.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 85 ②)	22
가. 도입 배경	22
나. 규정 내용	23
다.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23
라. 관련 사례	24
마. 별 칙	26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법 § 86)	27
가. 상시금지 행위	30
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행위(「법」§ 86⑤⑥)	35
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금지(「법」§ 86②)	46
라. 선거기간 중 금지(「법」§ 86①⑤~7호)	61
5.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62
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65
나. 기부행위의 예외 – 의례적 행위(「법」§ 112②2호)	71
다. 기부행위의 예외 – 구호적·자선적 행위(「법」§ 112②3호)	82
라. 기부행위의 예외 – 직무상 행위(「법」§ 112②4호)	84
마. 기부행위의 예외 – 기타 법령에 따른 행위(「법」§ 112②제5호)	106

6. 기타 제한 · 금지행위	108
가.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법」§ 57조의2③, § 57조의6)	108
나.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109
다.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90)	113
라. 틸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법 § 93)	117
마.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법」§ 95①)	120
바. 타연설회 · 각종집회 등의 제한(「법」§ 101, § 103)	121
사. 출판기념회	123
아. 기타	126

Ⅱ. 「정당법」·「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 129

1. 정당가입 금지	130
가. 입법 취지	130
나. 대상	131
다. 관련 사례	132
라. 벌칙	133
 2. 후원회 가입 및 후원금 기부 금지	134
가. 도입 배경	134
나. 규정 내용	134
다. 관련 사례	135

III.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139

1. 공무원 등의 입후보	140
가. 기간 별 사직 대상	141
나. 관련 사례	144
2.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	145
가. 입법취지	146
나. 제한주체 및 내용	146
다. 선거범죄로 인하여 취임 또는 임용이 제한되는 직	147

참고 149

1 공무원 등의 행위기준 일람표	150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주요 행위금지	151
3 관계 법령	153
(가) 대한민국헌법	153
(나) 공직선거법	154
(다) 공직선거관리규칙	177
(라) 정당법	181
(마) 정치자금법	182
(바) 국가공무원법	184
(사) 지방공무원법	186
(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88
(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89
(차)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190

I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2.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3.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5. 기부행위의 제한 · 금지
6. 기타 제한 · 금지행위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도입 배경

▶ 「법」 제9조는 선거에서 공무원 중립의무라는 헌법적 요청¹⁾을 구체화 한 것으로서 「법」 제정²⁾ 당시에 처음으로 도입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우리의 선거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의해 여야 합의로 도입되었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움

▶ 선거관여행위 금지규정은 「법」 제9조를 구체화하여 '14. 2. 13. 「법」 개정시 도입된 것으로서, 그동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적 비난 가능성 또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를 마련한 것임

1)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며, 공선법 제9조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규정임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2) 현행 「법」은 과거 '법경시 풍조'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될 정도로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았던 잘못된 선거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1993년 5월부터 국회에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 합의로 1994.3.16. 제정된법률 제4739호 것으로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부정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나 규정 내용

(1)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법」 § 9)

가) 주체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 단체 포함)

▶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좁은 의미의 직업적 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함.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음 (2004헌나1)

나) 금지행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본 규정 금지행위의 대표적 예시

중립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또는 주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것임.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그 시기, 빈도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2)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법」 § 85①)

가) 주체

-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나) 금지행위

-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선거중립의무와의 관계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 정치활동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중립의무 등에 위반되는 정치활동은 할 수 없는 것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

-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무직 공무원들의 일반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데 반하여, 「법」 제9조는 그들로 하여금 정치활동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 제9조는 선거영역에서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됨(헌법재판소 2008. 1. 17. 2007헌마700)

다 관련 사례

(1) 위반된다고 본 사례

▶ 정책협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 (2012. 10. 12. 선관위 회답)

▶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지침 시달

정부부처가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한 10개 산하기관의 직원에게까지 투표권유 등 정치활동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1만여 산하기관 직원에게 이를 교육하게 함 (2012. 4. 13. 공무원의 선거증립의무에 대한 협조 요청)

▶ 각 정당의 복지공약 재정소요 검토결과 발표

정부부처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하여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도자료 및 간부공무원 등의 인터뷰를 통하여 ‘재원조달방안이 그대로 실현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제기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소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복지공약 전면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므로, 이는 조세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공표함 (2012. 4. 5. 공무원의 선거증립 의무 준수 촉구)

▶ 국회의원 개최 주민간담회 참석

국회의원의 지역현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간담회에 현직 장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 (2007. 11. 20. 선관위 회답)

▶ 정당의 정책개발 간담회 참석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2007. 6. 21. 선관위 회답)

▶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 후원회장 취임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에 입후보한 지정권자의 선거자금 모금을 총괄·지휘하는 지위에 있으며,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그 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2008. 3. 10. 선관위 회답)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전·현직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현직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된 전직 시·도지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2007. 10. 30. 선관위 회답)

▶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대법원 2006. 6. 27. 2005도213)

▶ 공무원노동조합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개설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2006. 4. 13. 선관위 회답)

▶ 현직 장관의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발언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현직 장관이 특정 정당의 당직자 등과 함께 자신의 연고지역을 방문하여 기자간담회에서 “○○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으려 왔다”, “○○, △△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고, 당직자 등과 함께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를 외친 행위(2006. 2. 22. 선관위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발언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하고, 전국에 방송된 방송기자클럽초청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선거가 인접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선거 중립의무에 위반됨(2004. 5. 14. 2004헌나1)

- ▶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2) 위반의 우려가 있어 자체를 요청한 사례

- ▶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정인 지지 발언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연에서 대학생의 질문에 대해 “○○○이 나를 확고히 도와줬으니 나도 확고히 지원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국민들이 ○○○처럼 정당 밖의 인물을 원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함 (2012. 10. 22. 공명선거 협조요청)

- ▶ 국가기관의 장이 강연 시 후보자선택기준 제시

국가기관의 장이 단체초청 강연에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전 정부를 비판하고 현 정부를 호평하며 후보자선택 기준을 제시 (2012. 10. 22. 공직선거법 준수 협조요청)

- ▶ 장·차관들의 지역사업 예산지원 약속 발언

주무부처 장관을 비롯한 일부 장·차관들이 지역의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 사업의 계속된 추진 및 내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발언을 함 (2008. 4. 4. 국무총리에게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등에 관한 협조요청)

- ▶ 특정정당 소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 특강

주무부처 장관이 “내년 선거 때 어려워지면 좋은 공문을 보내주겠다.” 등의 선거 관련 지원 의혹을 사는 발언을 함 (2009. 7. 2. 공직선거법 준수 협조요청)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루어진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지방방문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연두순시 등의 일환으로 지방을 방문하면서 견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하여 선거와 관련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선거일 후로 연기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2000. 3. 14.) ⇨ 요청 수용

▶ 여야 정당간의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해명 광고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간에 논쟁이 되고 있던 국부유출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앙일간지 등에 해명성 광고를 게재한 사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다른 정당을 지원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관권선거 시비를 불러일으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정부의 선거관여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광고게재를 자제하도록 협조요청(2000. 3. 23.) ⇨ 요청 수용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의 각종 선심정책 발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일자리 창출, 특별소비세 인하,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자제 협조요청(2000. 1. 20.) ⇨ 요청 수용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국정홍보지 대량 배포

선거를 1개월여 앞 둔 시기에 현직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국정홍보지 10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하려는 것에 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선거일 후에 배포할 것을 협조요청 ⇨ 요청 수용

(3) 위반된다고 보지 않은 사례

▶ 교육공무원노동조합의 국민서명운동 후 후보자에게 전달

「국가공무원법」 등 타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교육공무원노동조합이 해당단체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2012. 10. 11. 선관위 회답)

- 다만, 서명운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9조·제60조·제87조·제93조·제107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공무원 대상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정설명회 개최

정부가 국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다수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책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바, 현 시점에서는 국가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정설명회라 할지라도 선거의 공정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개최하여야 할 것임(2010. 4. 12. 선관위 회답)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의 반부패·청렴교육 특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 특강을 하는 행위

- 다만, 강의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반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법」 상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2010. 4. 6. 선관위 회답)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시책교육 및 방문교육 실시

지방행정연수원이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

-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지지·선전·반대하거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같은 법의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2010. 3. 10. 선관위 회답)

▶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당직에 취임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활동을 함에 있어 「법」 제9조 또는 제86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2008. 5. 27. 선관위 회답)

▣ 대통령주관 혁신클러스터 정책 국정과제회의 개최

선거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의 등 직무활동을 하는 것은 「법」 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 다만, 직무활동을 함에 있어 「법」 제9조 및 제86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2007. 11. 16. 선관위 회답)

▣ 여성가족부장관의 여성유권자대회 참석 · 격려사

여성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 · 추천에 이르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격려사를 하는 행위

- 다만, 여성 후보자의 장점을 열거하거나 지방의회에 여성의 비율이 낮은 현실을 탈피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통하여 여성 후보자에 대한 지지 · 추천을 유도하는 때에는 양태에 따라 「법」 제9조 등 각종 제한 ·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2006. 4. 27. 선관위 회답)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등 공개

공무원노동조합이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 · 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또는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에 관한 분석자료를 인쇄물로 작성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인 이장들에게 송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고지 · 안내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행위시기 및 양태 등에 따라 「법」 제9조 · 제60조 · 제87조 ·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5. 5. 25. 선관위 회답)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후보자 서면질의회신내용 인터넷게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 · 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다만, 지지 ·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2002. 4. 15. 선관위 회답)

▶ 정치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의 보도자료 제공행위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적변경 등 신분변화에 따른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히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1997. 12. 16. 선관위 회답)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전에 당현·당규에 따라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소속 정당의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 제9조에 위반

▶ 구청장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공약사항 등)들을 구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구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라 벌 칙

▶ 공무원의 증립의무위반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55⑤)
-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 268③)
-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공무담임 제한(§ 266)

2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가 도입 배경

▶ 공무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에게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2008. 4. 24. 2004헌바47)

나 규정 내용

(1) 금지주체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른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운동 불가
-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 · 비서관 · 비서 · 행정보조요원
- 국회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 국회의원의 보좌관 · 비서관 · 비서
- 국회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 행정보조요원
- 국 · 공립대 총장 · 학장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인 교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신분·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는 등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하며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이 있음

공무원 외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세 미만의 자, 선거권이 없는 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10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 등 공공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 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총장~조교수는 제외)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언론인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의 대표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법」 제6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 ※ 외국인도 해당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

(2) 금지행위 : 선거운동

- ▶ 선거운동(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3)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시기

-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시기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아닌 때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됨

(4)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법」 § 58 ①)

-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사교적인 모임에서 담례로 출마사실을 공표하는 행위(98고합181), 지역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기사가 신문의 인터뷰란에 실린 행위(91고합58) 등

-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입후보 준비행위 또는 선거운동 준비행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 · 절차적 행위에 불과함
- ▣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유권자들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찬 · 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후보자 검증과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를 선거운동에서 제외
-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따라 공정선거의 달성과 정당활동의 자유보장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의 균형을 추기하기 위함
- ▣ 설날 · 추석 등 명절, 석가탄신일 · 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의 문자메시지 전송

(5) 선거운동을 위한 사직(「법」§ 60②)

- ▣ 대상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 · 리 · 반의 장
- ▣ 사유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 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 ▣ 시기 :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사직으로 보는 시기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임

다 선거운동 판단기준

(1) 선거운동의 개념

- ▶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³⁾
- ▶ 여기에는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하는 행위뿐 아니라 ‘특정 정당’을 위하여 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특정 후보자’에는 이미 입후보되어 있는 후보자는 물론 장래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됨⁴⁾

(2) ‘선거운동’ 해당여부 판단기준

- ▶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 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8. 26. 2015도11812)
- ▶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2015도11812)

3) 2010.12.9. 대법원 판결(2010도10451)

4) 2005.1.28. 대법원 판결(2004도4698)

▶ 선거운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행위의 ‘목적성’이며, 그 외의 ‘능동성’이나 ‘계획성’ 등은 선거운동의 목적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파악하는 데 기여하는 부차적인 요소임. 행위자의 ‘목적의지’는 매우 주관적인 요소로서 그 자체로서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의 ‘능동성’이나 ‘계획성’의 요소라는 상대적으로 ‘객관화될 수 있는 주관적 요소’를 통하여 행위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현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3)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의 의미

▶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 함은 비록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컨대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 연설원 등을 선임하기 위한 교섭행위 및 선거사무소·연설장소 등의 물색행위, 선거운동용 자동차·화성장치 등의 임차행위, 선거벽보 등 선전물의 사전 제작행위, 연설문 작성행위, 예비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법 해설강좌 실시행위 등을 말하는 것임(현법재판소 2005. 10. 27. 2004헌바41)

(4) 선거운동의 상대방

▶ ‘기부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법」 상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해당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07. 3. 30. 2006도9043)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와 그 제한

- 민주적 의회정치의 기초인 선거는 본래 자유로워야 함.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공정하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안 됨. 부정선거와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함. 헌법 제116조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것이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다만, 선거는 민주적 의회정치의 기초이고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임(헌법재판소 2011. 3. 31. 결정 2010헌마314).

라 관련 사례

(1) 선거운동으로 본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대책기구 참여

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할 수 없음. (2012. 2. 24. 선관위 회답)

▣ 공약개발 세미나 참석

국회의원의 입후보준비를 위한 선거공약개발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축사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여함. (2007. 11. 20. 선관위 회답)

▶ 군청직원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군청 6급 직원이 자신의 집전화를 이용하여 관내거주 선거구민 600여명에게 “나는 군수의 딸인데 어려운 일은 없느냐, 도와줄 일은 없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여 마치 군수의 딸이 지역주민의 생활을 걱정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여 군수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대법원 2006. 12. 7. 2006도6966)

▶ 동장의 통장대상 선거운동

동장이 신규위촉 통장을 대상으로 선거관련교육을 실시한 후 예비후보자를 불러 예비 후보자를 칭찬하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행위임(2006. 5. 18. 선관위 고발조치)

▶ 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운동

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은 선거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외에는 국회의원 입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음(2004. 3. 24. 선관위 회답)

▶ 선거홍보용 사진 촬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 출마 예정인 제자들과 선거홍보용 사진을 촬영함 (1998. 4. 27. 선관위 회답)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선진경영활동 사례집을 구입하여 선거구안의 유관기관 또는 선거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행위(1997. 7. 14. 선관위 회답)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내 60세 이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불우계층 등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는 행위(1997. 4. 18. 선관위 회답)

▶ 국무위원인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1994. 12. 22. 선관위 회답)

(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 비영리민간단체의 선거운동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라는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지하는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은 무방함(2012. 9. 11. 선관위 회답)

▣ 서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사 등 게재

서적에 저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내용의 추천사 또는 출간 축하의 글을 게재하는 것은 공선법상 무방함 (2011. 11. 15. 선관위 회답)

▣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회복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한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고 2008. 3. 19. 위 벌금형이 확정된 지 5년이 경과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회복되는바, 이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후 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2008. 1. 28. 선관위 회답)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2007. 9. 6. 선관위 회답)

▣ 시민의 날 행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의회의장 등 입후보예정자가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 (2006. 3. 9. 선관위 회답)

▣ 차기 구청장 또는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현직 구청장이 직무와 무관하게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업적·수상경력이나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2004. 10. 16. 선관위 회답)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은 선거운동 가능 (헌법재판소 2004. 4. 9. 2002헌마467)

▣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이 개최하는 조합장 이·취임 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예정자가 의례적인 축사 등 인사말을 하거나 동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팸플릿 또는 행사안내장에 의례적인 축사문(통상의 소형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 (2003. 3. 9. 선관위 회답)

▶ 새마을금고 시·도지부 대표자의 선거운동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광역시지부는 「법」 제60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새마을운동 협의회에 포함되지 아니함(2002. 10. 14. 회답)

▶ 이북5도 명예시장 등의 선거운동

이북5도의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및 읍·면장은 「법」 제6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1995. 6. 16. 선관위 회답)

▶ 약을 사려갔다가 입후보예정자인 남편에 대한 지지부탁

입후보예정자의 부인이 약을 사기 위하여 평소 이용하던 동네의 약국에 갔다가, 평소 안면이 있던 약사와 대화 중에 자신의 남편이 입후보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 배우자로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의례적인 인사를 한 것으로 볼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 1992. 10. 13. 92도1268)

(3) 선거운동을 위한 사직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더라도 선거사무장 등 공선법 제60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임(2010. 3. 4. 선관위 회답)

마 벌 칙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255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선거운동(§ 254②)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



3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도입 배경

▶ 공무원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행사를 통하여 선거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있음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선거의 공정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6. 12. 21. 2005두13414)

나 규정 내용

(1) 금지주체

-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 별 칙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은 자
 - ※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 및 구 「변호사법」 (2007.3.29. 법률 제 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1.3.10. 2010도14394)

(2) 금지행위

- ▶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이 경우 그 소속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 등 공공조합,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유관 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봄

다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 ▶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됨 (대법원 2013. 11. 28. 2010도12244)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 교부금 등의 교부, 융자의 알선, 물자의 불하, 계약의 체결, 사업의 실시, 허가, 인가, 검사, 감사 그 밖의 직무권한을 갖는 공무원 등이 지방공공단체, 공공기관, 유관 시기업체, 기타 관계단체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 그 권한을 근거로 영향력을 이용하는 경우
- 공무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직무상의 지휘 · 명령권, 인사권, 예산권 등에 근거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부하 또는 직무상 관계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선거에 즈음하여 투표를 권유하는 경우
- 우편 · 철도 기타 관공서의 창구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직원이나 주민조사 · 우편배달 등으로 호별 방문하는 직원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라 관련 사례 5)

(1)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 예비후보자 등록 당일 오찬 모임에서의 발언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현직 ○○군수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후보로 재출마하기 위하여 예비 후보등록을 하던 당일에 ○○군 내 각 실 · 과 · 소장급 공무원 및 읍 · 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오늘 이후부터는 선거전에 제가 몰입합니다.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유권자이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저를 다시, 동료이지만 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참석자들에게 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서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아울러 그것은 군수가 그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 선거운동에 해당함(대법원 2006. 12. 21. 2006도 7814)

5) 「법」 제85조 제2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를 금지하고, 동시에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행위의 양태가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그 사례를 함께 소개하는 것임

(2) 직무상 행위 또는 교육적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 공사의 감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후보의 지지 부탁

○ ○공사 감사가 소속 직원 3명을 감사실에 개별적으로 불러 이들과 같은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경우(대법원 2011. 4. 28. 2011도1925)

▶ 업체의 부사장이 소속 파견 직원대상 선거운동

업체의 부사장으로서 노무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가 파견근로중인 직원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모이게 한 후 식사를 제공하면서 “내가 시의원에 출마한다. 입당원서를 받아 달라. 당비는 내지 않도록 할 것이니 도와 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직업적인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임(대법원 2007. 3. 30. 2006도9043)

▶ 출판사직원의 선거운동원 활용

출판사를 경영하는 후보자와 그 출판사 직원들은 조직규율 및 직무 수행상 상하감독 관계에 있어서 그 지위로 인한 영향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직원들을 선거사무장 ·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법」 제85 조제2항(現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됨 (1995. 5. 19. 선관위 회답)

(3)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은 경우

▶ 군수의 “희망과 사랑의 전화” 운영

군수가 민원서류 출원자와 소외계층을 위주로 하여 “희망과 사랑의 전화”를 군정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은 직무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통화대상 주민을 현저히 확대하는 등 통화의 대상 · 방 법 · 내용 등에 따라서는 직무행위의 범위를 넘어 「법」 제85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1994. 9. 28. 선관위 회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1일 교사” 참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매년 스승의 날인 5월 15일을 전후한 1주일간을 교육주간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인 “1일 교사”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자가 해당 선거구 내의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강의하거나 교직원과의 대화시간을 가지는 행위는 무방함.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특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선거구 내의 학교를 순회방문하여 강의를 하게 하는 때에는 「법」 제85조에 위반될 것임(1995. 4. 26. 선관위 회답)

마 벌 칙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255③)

- 5년 이하의 징역

▶ 교육적 · 종교적 · 직업적 기관 · 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255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4**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 · 합당대회 ·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 · 후원하는 행위
 - 나. 특정일 ·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다. 천재 ·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 복구를 위한 행위
 -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 · 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 · 리 ·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 · 소식지 · 간행물 · 시설물 · 녹음물 · 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 · 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입법취지

-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선거운동 제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를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86조에서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자가 선거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헌법재판소 2005. 6. 30. 2004헌바33 결정)

기간별 구분

- **상시 금지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1호~3호, 제7항
-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금지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제6항
- **선거일 전 60일 전부터 금지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 **선거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5호~7호

가) 상시금지 행위

(1) 공무원 등의 금지행위(「법」 § 86①1~3호)

가) '공무원 등'의 범위

-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 ▶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포함) 및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의 대표자

나) 금지행위

- ▶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제1호)

업적홍보의 개념

-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고, 미담사례를 발굴 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하여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97. 4. 25. 97도320 판결)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제2호)

※ 공무원의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함(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마1096)

선거운동기획 참여 및 기획의 실시관여 행위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11. 2. 24. 2010도16650판결)
- “기획(企劃)”이란 일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참여”란 참가하여 관계함을 뜻하며, “관여”는 관계하여 참여함이 그 사전적 의미임
-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료제공, 홍보물 문안 검토, 연설문 작성, 인터뷰자료 작성, 토론 관련 질문수집, 당선소감문 작성 등이 이에 해당됨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3호)

다) 관련 사례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제1호)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현황 설명 요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시정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에 응할지 여부 및 설명의 내용·시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입후보예정자간에 공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설명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2014. 4. 24. 선관위 회답)

- ▶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이 구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전송
구민들에게 '○○高 자율형 공립고 선정! 우리 △△구 명문학교 만들기의 결실입니다. △△구청장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임 (대법원 2011. 7. 14. 2011도3862 판결)
- ▶ 소식지를 이용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설날을 맞아 ○○시청 공보관이 공기업인 △△를 혁신도시로 유치한 것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식지 20만부를 제작하여 선거구 안에 발송한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것임(대법원 2006. 12. 21. 2006도7649)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참석하여 영농시책 설명 등
긴급한 현안 없이 영농교육장을 순회방문하면서 영농교육의 목적범위에서 벗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업적 또는 시책을 홍보하는 설명이나 격려사를 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86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5. 1. 20. 선관위 회답)
- ▶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소식지 등을 이용한 정당의 선행 홍보
구청이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등을 수록한 책자 200여 권을 구청관내 동사무소 및 각 부서에 무료로 배포하고, 정당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한 사실을 구청소식지에 게재한 것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미だ 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할지라도 업적 홍보에 해당됨(대법원 1997. 4. 25. 97도320)

②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제2호)

- ▶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회 대담자료를 작성하고 예행연습을 한 행위
공무원이 방송사의 입후보예정자초청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인 도지사를 위하여 토론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담자료를 작성하거나 예행연습을 한 행위는 모두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어서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임
(대법원 2007. 11. 15. 2007도3061)

▶ 공무원의 단체장 지지층 확보를 위한 행사기획 문건 작성

공무원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지도 상승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개인 홈페이지 운영 방안과 박○○ 홍보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던 중, 시청공보관실에서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2005년 송년기획안’을 작성한 다음, 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제공하여 소관 과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담당 부서에 동 문건을 제공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촉박한 이유 등으로 실제 실행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임(대법원 2006. 11. 10. 2006도6063)

▶ 공무원의 후보자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 작성 · 제공

공무원이 16회에 걸쳐 후보자의 연설문, 인터뷰 자료, 선거공약, 토론회 자료, 보도 자료, 당선소감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에 참여한 것임(대법원 2005. 1. 28. 2004도6008)

▶ 공무원의 후보자 홍보물 내용검토 행위

공무원이 후보자가 작성한 선거운동용 홍보물의 내용이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수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문구를 검토하여 준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임 (대법원 2004. 3. 25. 2003도2932)

③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행위(제3호)

▶ 공무원직장업무협의회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설문조사 실시 및 공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하나,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또는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임(2004. 9. 4. 선관위 회답)

▣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통령선거입후보를 위한 사직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임기를 넘겨 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임(1997. 9. 11. 선관위 회답)

▣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시장의 중도퇴임관련 시민여론조사 실시

공무원등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시장의 중도퇴임과 관련하여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에 이르게 되어 「법」 위반(선관위 홈페이지)

라) 벌칙

▣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255①10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2) 자치단체장의 금지행위(「법」 § 86⑦)

가) 금지행위

▣ 소관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나) 관련 사례

▣ 관광객 유치·투자 촉진을 위해 방송 또는 신문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다) 벌칙

▣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256③)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행위(「법」§ 86⑤⑥)

※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금지됨

(1) 해당선거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함

(2) 자치단체장 및 소속공무원의 금지행위(「법」§ 86⑤)

가) 금지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 · 소식지 · 간행물 · 시설물 · 녹음물 · 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 · 방송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금지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허용됨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법」§ 86⑤, 「규칙」§ 47④)

- 법령에 의하여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소속지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 각종 통계 · 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 · 연감 또는 종합등의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 교양강좌 · 공청회 · 체육대회 · 기념일 · 고유죽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 · 사진 · 활동상황 · 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 환경 · 의료 · 교통 · 조세 · 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 역사 · 지리 · 문화 · 특산물 · 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 재난관리 ·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함)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홍보물

「법」 제86조제5항 운영기준

• 「법」 제86조제1항제1호와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 추진실적 ·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 1호의 규정에 위반됨

• 「법」 제86조제5항의 적용범위

- (홍보 지역에 따른 적용범위) 「법」 제86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소속공무원을 포함)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설치 · 배부 · 방송하는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분기별 1종1회에 한하여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선거구 밖에 홍보물을 설치 · 배부하는 것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선거구 밖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구민의 왕래가 빈번한 같은 생활권역에 홍보물을 설치 · 배부하는 것은 「법」 제86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됨 관광객 유치 · 투자촉진 등 그 성질상 홍보대상이 선거구 밖에 있는 자인 경우 전국을 발송 · 배부권역으로 하는 방송 · 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에 관한 홍보라고 하더라도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로 보지 아니함. 다만,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 (홍보내용에 따른 적용범위)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 · 추진실적 · 활동상황이 게재되는 홍보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 사진 등이 게재되지 아니하더라도 분기별 1종1회에 한하여 발행 · 배부 또는 발송할 수 있으며, 홍보물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규칙」 제47조제4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각종 행사, 정보제공 등을 위한 홍보물은 인쇄물 · 시설물 · 녹음물 · 녹화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 사진 등이 게재되는 경우(제7호의 홍보물은 직명이 포함되는 경우도 포함)에는 1종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됨
「규칙」 제47조제4항제7호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는 청사의 범위에 동사무소 · 사업소 · 도서관 등 「지방자치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교육 ·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함

- 1종 1회의 개념

「법」 제86조제5항의 홍보물의 종수의 산정 시 “1종”이란 ‘홍보매체 또는 제작형태 · 규격 · 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을 말함

횟수 산정 시 “1회”란 홍보매체별로 인쇄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발행 · 배부계획에 따라 당해 분기 내에서 주민별로 1회 이내에서 배부하는 것’을 말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하나의 시설물을 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전광판을 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시간 대에 1회 방영하는 것’을 말하고, IPTV의 경우 특정 채널에 1종 영상홍보물을 게시하여 두는 것을 말하며, 신문 · 방송에 광고하는 경우 「법」 제69조(신문광고)제1항 후단 및 제70조(방송광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1회’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과 업적홍보 · 인쇄물 배부 등과의 관계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배부가 허용된 홍보물이라 하더라도, 그 홍보물에 「법」 제8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게재하거나 「법」 제90조 · 제254조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 「법」 제86조제7항과의 관계

제86조제5항에 따라 허용되는 홍보물 중 방송 · 신문 · 잡지 · 시설물 등 통상적인 광고 매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경우 동조 제7항에 따라 제한되는 것으로 보되,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한 인쇄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7항에 따른 광고출연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그 인쇄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 추진실적 · 활동 상황 등 공익적 사항을 홍보하는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나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이나 광고에 이르는 내용인 때에는 1종 1회 홍보물에 포함됨은 물론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제86조제1항 · 제7항, 제93조 또는 제254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봄

제86조제5항에 위반되거나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홍보물(선거구 외의 광고 또는 종전에 허용된 전국단위의 광고 등)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면 제86조 제7항을 적용 받음

나) 관련 사례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 여부관련

▶ 행사안내서 · 민원안내서 · 반상회보 · 관광안내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홍보물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 · 성명 등을 게재하는 행위

「규칙」 제47조제4항제3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홍보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
사진 · 활동상황 · 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을 게재할 수 없고, 동규정 제7호에 규정된
홍보물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도 게재할 수 없는 바, 이를 게재하면 「법」
제86조제5항의 분기별 1종 1회에 포함되는 홍보물로 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계획에 따라 직접 개최하는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문을 게재하면서 성명·사진을 게재하면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하나, 중앙행정
기관이 주최하고 그 기관이 시달한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라면 제한된 범위내의
자에게 발송하는 초청장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사진 제외)을 게재한 초대의 글을 게재하거나,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팸플릿)에 축사·대회사 등 인사말을 게재하면서 직·성명 또는
통상적인 소형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 출향인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홍보 서한문 발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배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 통 · 반장 간담회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배부

현장민원 청취를 위한 반장과의 간담회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이 게재
된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은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됨

▶ 열차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 추진실적 홍보영상물 방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 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물을 연합뉴스에
제공하여 당해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KTX 및 새마을호 열차 내에서 방영하는 것은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 방송에 해당될 것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방영할 수 없음

▶ 버스에 LCD 모니터를 장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홍보 녹화물을 방송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녹화물을 제작하여 관할구역을 운행하는 버스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분기별 1회를 초과하여 홍보물을 방송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선거구밖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행위
수도권 지하철역 구내에 지방의 특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홍보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선거구민의 왕래가 빈번한 같은 생활권역 안에 있는 버스터미널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 등이 게재된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동규정에 따라 1종 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로 봄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홍보물 설치 지역에 관계없이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신문광고

황토사과특구 지정에 따른 특화사업내용을 당해 지역을 배부권역으로 하는 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1종 1회 범위 안에서 가능함
– 다만, 그 광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7항에 위반됨

▶ 지방자치단체가 e-mail 주소를 등록한 주민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식 또는 주요시책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행위
「법」 제86조제5항 각 호와 「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홍보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 추진실적 ·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발행 · 배부 횟수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됨

▶ myLinker 서비스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홍보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6조제5항 각 호와 「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홍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발행 · 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됨

※ myLinker 서비스란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myLinker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미니홈피 형태의 팝업창을 통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시정·공지사항·입찰정보·채용정보 등의 내용이 전달되는 서비스임

▶ IPTV를 통한 홍보영상물 방송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IPTV의 시정안내 채널을 통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두는 것은 분기별 1종 1회에 해당됨

▶ 지방자치단체의 수상경력 홍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상경력을 시설물을 이용하여 거리에 홍보하는 것은 「법」 제86조 제5항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됨

※ 단순한 수상 내용만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벽면 또는 담장에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5항 본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인쇄물의 보조자료인 프레젠테이션 방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읍·면·동 연두순시에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알리기 위한 홍보책자 배부 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조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설명 보조자료는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 홍보영상물의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 방송

IPTV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사무실·민원실 등 내부공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내용의 시정소식을 방송하는 것은 「법」 제86조제5항의 제한을 받지 않음

위반사례

▶ 전화번호부 기타 기업체나 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기관지에 인사말을 게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부합하는 공적인 직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금지됨

가능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광객 유치 외국 일간신문 광고 출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신문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선거의 선거일전 90일 이후에 귀문의 신문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에 위반될 것임

▣ 지역내의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체육행사 관련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발송하는 초청장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의 지위에 있는 경우 직·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초대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을 것이며,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팸플릿)에는 축사·대회사 등 인사문을 게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부합하거나, 대회장 등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경우 직·성명·통상적인 소형의 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인사문을 게재할 수 있음

- 다만, 초대의 글 또는 인사문의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거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등 게재내용·배부대상 등에 따라서는 행위 시기에 따라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 백서발간·배부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전국체전 백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간사(직명·성명·사진포함)를 게재하여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 전 시·도, 유관기관, 학교 등에 배부하는 것은 무방함

▣ 반상회보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의 일부지면에 의회소식란을 설정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원(직·성명, 사진, 지역구 등 표시)의 대 집행부 질의 등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일상적인 활동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무방함

- 다만, 지방의회 내에서의 활동이 아닌 선거구의 활동내용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86조제1항·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상품권의 앞면에 “○○군수 직인”으로 직명과 직인을 명기하여 발행하는 것은 무방함

▣ 열린음악회 출연

열린음악회 방송도중 MC의 소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객석에서 일어나 인사(인사말)를 하거나,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팸플릿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

▣ 열차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 고유축제 ·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방영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 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 없이 특산물 · 고유축제 · 투자유치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한국고속철도(KTX) 및 공항 철도 열차 내에서 방영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나, 「법」 제86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홍보광고탑

지방자치단체가 첨단기업유치를 위하여 “생물 · 생명산업의 메카 ○○! 내장산 자락에 투자하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고속도로 통행자들이 볼 수 있도록 관할구역안의 고속 도로변에 홍보 · 광고탑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함

▣ 경전철 홍보관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유용성을 알리기 위하여 경전철 사업 홍보관(경전철역사관, 경전철세계관, 영상교육관, 전주경전철관으로 구성)을 설치하거나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홍보영상물 상영 또는 팸플릿 등 홍보물을 발행 ·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홍보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 · 선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홍보영상물 또는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 사진 · 활동상황 · 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을 게재하여 상영 · 배부하는 것은 금지됨

▣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지방자치단체장이 TV · 신문 · 잡지 · 라디오 등 언론매체의 취재에 응하여 단순히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엑스포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는 것은 「법」 상 무방할 것이나, 동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신문 등을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에 위반됨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추진 홍보자료 배부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사업과 관련 지역주민의 이해를 돋기 위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시 산하기관 민원실에 비치하여 홍보하는 것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거나 그 특정 사이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문(직명 · 성명 · 사진 포함) · 약력을 게시하거나, 통상적인 동정 · 행사참석 상황, 지나간 행사의 인사문 · 연설문 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의례적 · 직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함

– 다만, 초기화면(pop up창 포함)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 성명 또는 통상적인 크기의 사진을 게시하는 외에 인사문 · 약력 · 동영상물 등을 게시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 선거운동 또는 업적홍보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이 경우 초기화면에는 지방자치단체명만 나오고 이를 클릭하면 바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문 등이 나오면 이를 초기화면으로 간주함

(3) 단체장의 금지행위(「법」 § 86⑥)

가) 금지행위

▶ 주민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법」 § 86②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는 가능

※ 연가기간 중 정규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법」 제86조제6항에 규정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 제86조제6항 운용기준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운용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및 제3조(기념식 및 행사)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사의 절차 · 방법 · 규모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 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6항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준하는 행사로 보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직원체육대회 등 내부적 행사는 근무시간중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또한,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한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음

[공공기관의 범위] 「규칙」 제47조⑤)

1.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 「유아교육법」 · 「초 · 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
4. 한국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 · 도조직 및 구 · 시 · 군조직을 포함)
8. 법령 ·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9.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

나) 관련 사례

① 공식행사 참석 사례 (허용 사례)

▣ 환경보호위원회 창립기념행사 참석행위

「법」 제86조제6항 제한기간 중 지방검찰청 환경보호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무방함

▣ 투명사회협약 체결식 참석행위

「법」 제86조제6항 제한기간 중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개최하는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하고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함

▣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참석행위

「법」 제86조제6항 제한기간 중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무방함

② 사적행사 참석 사례 (금지 사례)

▣ 공공기관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의 장의 이·취임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제한기간의 근무시간에도 가능할 것임

- 다만, 공공기관의 직원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 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각·외출·조퇴를 신청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법」 위반(2013. 12. 24 선관위 회답)

참석이 금지되는 사적행사의 범위

- 선거구 밖에서 개최되는 사적행사

「법」 제86조제6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규 근무 시간에 선거구 밖에서 개최되는 사적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개최하는 행사라면 참석이 금지 됨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서 참석하는 사적행사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에 임박하여 그 지위를 가지고 사적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지하는 것임.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함

(4) 벌 칙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55①10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금지(「법」 § 86②)

※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 자치단체장의 금지행위

가) 금지행위

▶ 정당의 정강 · 정책과 주의 ·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 선전하는 행위(제2호)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무방함

- ▶ 창당대회 · 합당대회 ·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제3호)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 ▶ 법령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등을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제4호)

- ▶ 통 · 리 ·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제5호)

※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 가능

나) 관련 사례

위반사례

- ▶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 · 설명회 · 불우이웃돕기 · 일일찻집 행사 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참석할 수 없음

-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 정당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구 밖에서 개최하는 정치행사,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 정당 내부조직의 당연직 구성원인 경우에도 참석할 수 없음

가능사례

-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당해 단체장의 공약이행결과 평가보고회를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또는 매니페스토평가단과 공동으로 당해 단체장의 공약이행 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단체장을 선전함 없이 공약추진과 관련 있는 자나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

다만,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른 제한기간과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일반선거구민을 참여하거나 반복하여 개최하는 등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 · 선전하는 경우는 위법

▣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 : 시기에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음

▣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 등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가 아니므로 사무소 개소식 등 후원회가 개최하는 행사가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닌 한 참석할 수 있음

– 다만,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간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음

▣ 정당집회에서 연설하는 행위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연설은 제한되지 아니하나, 의례적 방문만이 허용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서는 지지연설을 할 수 없음

▣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원단합대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으로서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할 수 있음

▣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에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나,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함

▣ 근무시간 중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법」 제86조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됨

(2) 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의 금지행위

가) 금지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제4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법」 § 86②4호, 「규칙」 § 47②)

- ①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②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④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 후원은 금지
- ⑤ 집단민원 또는 긴급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⑥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제2조(기념일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⑦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⑧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⑨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⑩ 그 밖에 위 ⑥~⑨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법」 제86조제2항제4호 운용기준

- 「법」 제86조제2항제4호(직무상의 행위)와의 관계
 - 「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금품제공행위와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행사의 개최·후원은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서 따로 법령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행사 개최·후원이 법령에 근거하였다고 하여 동 행사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님. 다만, 그 행사에 필수불가결한 범위내의 금품제공(표창·포상시 부상 제외)은 그 행사에 부수된 것으로서 행사의 한 부분으로 보아 제공이 가능함
 - 무료의 음악공연이나 영화상영처럼 행사 자체에 기부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행사개최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는 동시에 기부행위에 대한 법령의 근거로 되는 것으로 보아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구 · 시 · 군(읍 · 면 · 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법」 제86조 제2항제4호나목의 “특정일 ·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볼 수 있음
※ 구 · 시 · 군민의 날 행사를 “특정일 ·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보지 아니한 기준 선례(지방자치단체의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 2005.4.14.)는 변경된 것으로 운용함
-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예술단의 공연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음

- “법령에 의하여”의 운용

-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법률 또는 명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를 의미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 ·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처럼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 · 후원하는 행위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봄
- 「법」 제86조제2항제4호나목의 “법령에 의하여”라 함은 행사자체가 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행사의 시기까지도 금지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법령에 특정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에 개최되는 행사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동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행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됨
-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종전의 실시 횟수 · 대상 등을 현저히 확대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종전의 실시 시기를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어 개최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될 것이므로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봄

나) 관련 사례

① 교양강좌

가능사례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교양강좌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구·시·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조례로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강료 형태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로서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방송국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여 수능방송·정보화교육·어학강좌·교양강좌 등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상 무방함

▣ 건강교실·주민정보화교육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의 운영,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조례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 운영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후원하는 행사로서 무방함

▣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생교육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나, 조례로 이를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임

▶ 성인문해교육

지방자치단체가 저학력 성인의 사회적응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지원 교육으로서 문해교육(한글교육)을 개최·후원하거나 「평생교육법」 제39조(문자해독 교육의 실시 등)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경비를 보조하여 문해교육을 하게 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되어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함

▶ 제한기간 중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 계속반 신설

주민자치센터의 일부강좌가 새로 신설되어 기초반만 운영되어온 경우 「법」 제86조 제2항의 제한기간 중에 기초반의 정규과정이 종료됨에 따라 기초반외에 계속반을 운영하는 것은 무방함

② 문화·예술행사

위반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후원명의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후원명의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후원에 해당됨

가능사례

▶ 무료영화 상영 및 무료음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 지역문화제·지역축제

「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 축제’ 등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 군부대 장병 및 전·의경을 대상으로 하는 군경위문공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위문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아 상시 가능함

▶ 구·시·군민의 날 행사 및 부대 문화·예술행사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법」 제86조제2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기간 중에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며, 구·시·군민의 날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최할 수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문화의 날 설정 등)와 동법 시행령 제16조(문화의 날 설정 등)에 따른 문화의 날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 및 문화의 달(매년 10월)에 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나 ‘강연회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③ 체육행사

위반사례

▶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시기에 관계없이 개최·후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최하는 경우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장자에 대하여 시상(부상제외)하는 행위는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경품·기념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 걷기대회·마라톤대회 등 체육행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걷기 대회·마라톤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장자에 대하여 시상(부상 제외)하는 행위는 행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참가비를 넘는 가액의 참가기념품·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가능사례

▣ 생활체육협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 체육관리지침」·「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생활체육협의회의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어 무방함

※ 생활체육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기(배)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등을 개최하고 우승기 또는 우승컵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표기하는 것은 무방하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운동이 되어 금지됨

※ 생활체육협의회가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이 통상적인 상장·상패를 수여(「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접 수여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은 무방하나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음

※ 생활체육협의회가 정관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참가자에게 그 명의로 식사·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면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④ 각종 기념일 행사

가능사례

▣ 식목일(4.5.)

산림청장이 「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나무갖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함

▣ 예비군의 날(4월 첫째 금요일)

방위협의회 회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 육성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하거나 표창장을 친수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포상을 전수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는 외에 일반선거구민을 표창하는 때에는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음

▶ 장애인의 날(4.20.)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표창(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표창(부상 제외)을 하거나 동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 근로자의 날(5.1.)

노동단체가 개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일·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함

※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참석자에게 교통비·기념품·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기념품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 어린이 날(5.5.), 어린이주간(5.1~5.7.)

「아동복지법」 제5조(어린이 날 및 어린이주간)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 모범 어린이에게 시상(부상 제외)하거나, 소년·소녀가장 등 제한된 범위의 어린이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사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가능할 것이나, 다수의 어린이에게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 민간단체가 법령에 의한 어린이 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후원하는 것은 상시 가능할 것이며, 동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기념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 어버이 날(5.8.), 노인의 날(10.2.), 경로의 달(매년 10월)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개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를 개최하면서 중앙정부가 수립·시달한 지침의 범위안에서 참석한 노인에게 식사·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식사·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 민간단체가 법령에 의한 어버이 날,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후원하는 것은 상시 가능할 것이며, 동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기념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수립·시달한 「어버이 날 행사 및 포상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소외계층 노인에게 카네이션과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소방의 날(11.9.)

국민안전처가 「소방기본법」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시달한 「제00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 기본계획」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협조 사항」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원 및 주요 내빈을 대상으로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명의의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동 행사에 참석한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함

⑤ 민원상담

가능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무료민원상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는 상시 가능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됨

▶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생활과 관련있는 생활법률상담(행정·민사·형사·가사 등)을 하는 행위 및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무방함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민원상담 장소제공행위

변호사단체 등 전문직업인 단체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장소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상시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상담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추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이동민원실 · 직소민원실 운영

민원인이 보다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동민원실(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은 무방함

⑥ 사업설명회 · 공청회 등

위반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대표 간담회 · 직능단체모임 또는 민방위 교육 등에 참석하거나, 의견수렴 명목으로 주민들을 만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읍 · 면 · 동 관계 공무원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없이 계획적 · 반복적으로 관내 읍 · 면 · 동을 순회하거나 민방위교육 등에 출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 추진실적 · 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홍보 또는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제한기간에는 개최가 금지되는 사업설명회에 해당될 수 있으며, 주민대표 간담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하는 경우는 물론 읍 · 면 · 동 관계 공무원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됨

가능사례

▶ 사업설명회 · 공청회를 개최하고 홍보물 ·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제한기간에도 집단민원 · 긴급민원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 · 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동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를 제외함)의 제공은 가능)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며, 홍보물 배부는 「법」 제8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 규정에 따라 제한됨

▶ 주민예산설명회 개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의 범주안에서 한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예산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참석한 주민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를 제외함)를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그 절차의 범주를 벗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이나 사업계획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동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4호에 위반됨

⑦ 준공식·개통식 등

위반사례

▶ 기공식 개최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가능사례

▶ 도로준공식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에 정부가 도로의 준공 및 개통일정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도로개통식을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단순히 안내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행사를 개최·진행함에 있어 「법」 제9조·제86조·제103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새만금방조제 끝막이 공사 성공기념행사

새만금방조제 최종연결공사 성공을 축하하는 행사는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행사진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됨

⑧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보조금 지급

위반사례

▶ 사회단체가 특정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아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사에 해당됨

※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이 아닌 때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동 기간중에 지급하는 것은 해당 제한기간중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운용함. 한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따라서, 사회단체가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그 개최시기가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인 경우에는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즉,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사의 개최·후원 시점은 그 경비제공 시기가 아니라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 ※ 특정행사 후원경비가 아니라면 연초 결정된 보조금을 분기별·월별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⑨ 기타 행사

위반사례

- ▶ 선거일 전 60일 후에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각종 행사 개최 · 후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등이 실시될 경우 당해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 안에서 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관계가 있는 자, 선거구안의 기관 · 단체 · 시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 · 후원할 수 없음

가능사례

- ▶ 교육청의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합행사 지원
교육청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교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교원노동조합 주관행사를 지원하는 행위
- ▶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 농산물박람회 개최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에 개화 · 파종 · 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훼류 · 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되어 무방함
- ▶ 관할구역 밖에서 선거구민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에 한류활성화를 통한 한류상품 수출확대 및 아시아 지역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위하여 경기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주최로 코엑스 (서울)에서 한류문화상품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3) 벌 칙

-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55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라) 선거기간^{*} 중 금지(「법」§ 86①5~7호)

* 대선 :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23일)

* 기타선거 :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14일, '16.3.31~4.13)

(1) 공무원 등^{*}의 금지행위 *p. 30 '공무원 등'의 범위 참조

가) 금지행위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 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의 반상회 개최(§ 103④)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

-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으로 「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명목상 · 형식상이나마 당해 공무원 등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행위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함⁶⁾
- 공무원의 정상적 업무외의 모든 출장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처벌함⁷⁾

나) 위반사례

- ▶ 공무원이 선거기간 중 출장하여 후보 단일화를 권유하는 행위
 - ○읍장이 선거기간 중에 출장을 하여 후보자의 집을 찾아가 후보자 2명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후보를 양보하라”며 후보 단일화를 권유한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임(대구고법)

다) 벌 칙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256③)

6) 2005.8.19. 대법원 판결(2005도2690)

7) 2005.10.27. 헌법재판소 결정004헌바41)

5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거 목)
2. 의례적 행위 (가~파 목)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아 목)
4. 직무상의 행위 (가~차 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④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 · 방법 · 범위 · 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 되는 경우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 · 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 · 지시 · 권유 · 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 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 · 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 · 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임 · 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 · 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116조(기부의 권리·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리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제118조(선거일후 담례금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담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3.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5.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1) 입법취지

- ▶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 조성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 ▶ 이를 방지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 행위를 근절·청산하여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9. 4. 23. 2009도834)

(2) 규정체계

- ▶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 정의를,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각각 규정함
- ▶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는 주체별 기부 금지를, 제116조 및 제117조는 기부를 받는 행위 금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주체별 제한내용 ■

조문	주체	제한기간	주관적 요건	제한 내용
§ 113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	상시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기부행위 금지 •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 금지
§ 114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 위원회를 포함) ·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	선거기간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선거기간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조문	주체	제한기간	주관적 요건	제한 내용
§ 115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116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 117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 법인 · 단체(§ 114)

-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이라 함은
 -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 손자 등),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대담 · 토론자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 · 단체 또는 그 임 · 직원을 말함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 · 단체」라 함은
 - 후보자 또는 그의 가족이 임 · 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 · 단체
 -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국회 의원후원회 등)를 말함
-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봄

(3) 기부행위의 정의(「법」 § 112)

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해석상 기부행위의 개념

해석상 ‘기부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대법원 2009. 7. 23. 2009도1880)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행위를 무상으로 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에 관하여는 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관계라고 할 수 없어 기부행위가 됨
-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된다고 해석해야 함

나) 의미

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 ▶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됨(대법원 2007. 3. 30. 2006도9043 판결)

※ 선거운동을 위해서 선거구 안에 체재 중인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 500 판결), 지방자치단체 출입기자단(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1049 판결), 선거구에 취재차 방문한 기자단(대구지법 경주지원 2006. 12. 4. 2006고합65), 엑스포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팸투어(사전답사여행)에 초청된 선거구 내 주재기자(2005. 12. 8. 선관위 회답)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주한외국인 또는 인근 시·군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00시 관내 문화유적지 등 견학(2001. 4. 12. 선관위 회답),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엑스포 홍보 및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전국의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팸투어(사전답사여행) 참석자 (2005. 12. 8. 선관위 회답)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② ‘기관·단체·시설’의 범위

▶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의 법인과 같이 형식적·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6. 6. 28. 96도1063)

※ 선거구 안에 소재지가 있는 단체는 기부금지 단체에 해당함. 선거구 밖에 있는 단체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활동목적·내용의 관련성, 활동영역의 관련성, 구성원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③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함 (대법원 2010. 12. 9. 2010도10451 판결 등).

※ 기초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엑스포 행사기간 중에 각종 공식행사(개막식, 개장식, 폐막식, 입장권판매 행사)에 초청된 중앙·도단위 또는 국외외빈에게 환영 오·만찬, 기념품, 항공료, 숙박료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군단위 인사를 대상으로 환영 오·만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2005. 12. 8. 선관위 회답)

(4) 기부행위 제한기간 : 상시제한

※ 2004. 3. 12. 「법」 개정시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금지

(5) 기부행위 판단의 형식

- ▶ 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의 체제와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특히 제114조, 제115조에서 기부행위와 선거와의 관련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 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대법원 2007. 11. 16. 2007도7205)

※ 제113조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님.

(6)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 112②)

-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15개(제1호)
- ▶ 의례적 행위 13개(제2호)
- ▶ 구호적 · 자선적 행위 8개(제3호)
- ▶ 직무상 행위 10개(제4호)
- ▶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행위(제5호)
- ▶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

※ 기부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이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대법원 2009. 4. 9. 2009도676)

(7)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의 특별제한(「법」 § 112④)

-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 · 조례에 따라 표창 ·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해야 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
- ※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 ▶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8) 처벌

가) 기부행위 관련 벌칙조항

- ▣ 기부행위를 한 자
-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57①)
- ▣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기부를 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57②)
- ▣ 「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기타 이익제공 이외에 명목여하(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 또는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30①4호)
 - 다만,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30③)
- ▣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함(§ 261⑨)
- ※ 제공받은 금액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법」 § 257②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음
- ※ 다만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나) 기부행위 제한 · 금지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와 공무담임 제한

▶ 당선무효(§ 264, § 265)

-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위반 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

▶ 공무담임의 제한(§ 266)

-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일정한 공직에 취임 또는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됨

나) 기부행위의 예외 – 의례적 행위(「법」 § 112②2호)

(1) 친족의 경조사에 축 · 부의금품 제공(「법」 § 112②2호가목)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 ·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친족 외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2) 국경일의 기념식 등에 화환 제공(「법」 § 112②2호다록)

가) 규정

-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 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나) 사례

위반사례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을 제공하는 행위
- ▣ 선거구 안 지역신문사 창간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 개업식에 의례적 내용의 축전 발송 행위는 무방

가능사례

- ▣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 파출소 준공식에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기념식수를 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표지석에 국회의원의 직·성명이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할 수 있을 것임(2015. 9. 3. 선관위 회답)
- ▣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신청사 준공식에 직·성명을 부각되지 않게 기재한 의례적인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선관위 홈페이지)
-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한 경로당·마을회관은 공공시설로 볼 수 있으며, 이의 개소식에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2009. 3. 25. 선관위 회답)

- ▶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화분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밖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보내는 것은 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 위반(2008. 7. 16. 선관위 회답)
- ▶ 「2006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추모 전국합동위령제와 해원굿」 행사에 화환을 보내는 것은 무방함(2006. 12. 1. 선관위 회답)

(3) 공익재단 등의 금품 제공(「법」 § 112②2호라목)

-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무방함
- ▶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제112조에서 같음)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

(4)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에 회비 납부(「법」 § 112②2호마목)

- ▶ 입후보예정자 등이 향우회·종친회·동창회·친목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무방함

(5) 교회·사찰 등에 현금(「법」 § 112②2호바목)

-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현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는 무방함
※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현금은 할 수 없음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 · 부의금품 등 제공(「법」 § 112②2호아목)

가) 규정

- ▣ 기관 · 단체 · 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 · 단체 · 시설의 대표자 ·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 · 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 · 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12조제2항제2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소속 상근직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인력관리규정에 따라 연간 300일 이상 사역하는 일용인부인, 환경미화원, 도로 보수원, 단순 일용자,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등 상근인력(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외) 포함(2005. 12. 7. 선관위 회답)

- ▣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 · 단체 · 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 · 설 · 추석 · 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 · 단체 · 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

※ 「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소속 상근직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보건소 및 읍·면·동 사무소 직원 등)

나) 사례

위반사례

-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게 축 · 부의금 제공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법」 제112조제2항제2호아목의 “소속 상근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 · 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축 · 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

- ▣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 소속직원에게 축 · 부의금 제공

「법」 제112조제2항제2호아목의 규정에 의한 소속 상근직원이라 함은 본청 소속의 상근직원을 말하므로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속의 상근직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건소 소속직원 ·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 · 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축 · 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책·성명이 기재된 근조·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 ▣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

가능사례

- ▣ 소속직원의 경조사 시 축의·부의금과 화환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화환제공 시 기관장의 직·성명 모두 기재 가능(2007. 2. 9. 회답)
- ▣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수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경조사에 하객이나 조객(「법」 제113조에 규정된 기부행위 금지자를 제외함)으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범위안의 축·부의금품을 받는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행동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 상 제한되지 아니함
- ▣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조사 관련 청첩장 발송 및 신문광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청첩장을 보내거나, 신문이 관례적으로 해오던 알림란을 통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 상 제한되지 아니함
- ▣ 지방의회의장 등 취임 축하 화분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의한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그 밖의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행위

(7)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에서 시상(「법」§ 112②2호자목)

가) 규정

-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 이하 이목에서 같음)을 수여하는 행위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행사라 함은 해당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행사를 말하므로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결성되었더라도 각종 단체의 내부 행사(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노래자랑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함)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 상장을 수여할 수 있음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사생대회,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백일장, 대학생 음악콩쿠르, 주부대상 여성발전 논문공모전 등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행사로 볼 수 있음

※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의 경우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 확정된 행사라면 정기적인 것으로 보아 무방한 것으로 운용함

※ ‘각급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다른 대학 등을 말함(어린이집, 노인대학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개최기관의 성격에 불문하고 공익을 위하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볼 수 있음

- ▶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함

- ▶ 다만,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

나) 사례

위반사례

- ▶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도자기 상패는 「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등의 상장에는 포함되지 아니함(2009. 7. 14. 선관위 회답)

▶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아파트 포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수 아파트를 선정하여 포상을 하는 것은 「법」 제114조에 위반됨

▶ 지방자치단체장 표창시 제3자의 부상 수여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하는 때에 후원기관이 상금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는 「법」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되며, 표창·포상자가 상금 수여자와 통모한 경우에는 통모 주체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예산으로 환경단체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입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상하는 자가 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2005. 9. 29. 선관위 회답)

▶ 각급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의 입학식·졸업식에서의 시상

지방자치단체 산하부설교육기관인 재단법인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콘텐츠아카데미 졸업·입학식에서 동 진흥원의 이사장과 부사장을 맡고 있는 도지사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2006. 1. 26. 선관위 회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 행사(내부행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볼 수 없음)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 축제·개교기념일은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포함되지 않음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하는 행위

※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의례적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

▶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하는 때에 후원기관이 상금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

가능사례

- ▣ 상장은 반드시 종이로 제작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상패·트로피·감사패 등의 형태로 수여 가능(2005. 9. 29. 선관위 회답)
- ▣ 전국 단위의 행사(행사 참가 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2008. 10. 2. 선관위 회답)
-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입상자가 아닌 행사와 관련된 유공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의 규정에 따른 의례적 행위로서 감사패 또는 표창 수여(부상 제외) 가능(2005. 8. 25. 선관위 회답)
- ▣ 지방자치단체장의 각급학교의 졸업식에서의 시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대학 등 학교의 졸업식에서 모범적인 학생에게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다만, 각급 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 시상하는 것은 금지되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음
- ▣ 지방의회의장의 유공시민 포상
지방의회의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상(부상 제외)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밖의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 ▣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인 생활체육회의 체육회 명의의 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인 생활체육회의 행사시 체육회의 명의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부상과 시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다만, 체육회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상과 시상금을 수여하여서는 아니됨

▶ 조례에 의한 포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때에는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직·성명을 표시하여 직접 수여할 수 있으나,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음

- ▶ 관계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념행사에서 국회의원이 그 지위에 맞는 의례적인 범위의 표창 또는 포상(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회장으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 전국 규모의 행사(행사 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 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의 입상자에게 상장(부상 포함)을 수여하는 행위
-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입상자가 아닌 행사와 관련된 유공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례적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표창 · 포상행위 제한

◆ 시상과 부상 수여가 가능한 경우

- 정기적인 창립기념식 · 사원체육대회 ·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 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 표창(「법」 § 112②호타목)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금지됨
 - ※ 자치구 · 시 · 군의 장이 포상하는 경우 읍 · 면 · 동 직원, 시 · 도지사가 포상하는 경우 구 · 시 · 군 및 읍 · 면 · 동직원은 소속직원에 해당되므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제공도 무방함(2005. 8. 25. 선관위 회답)
- 현상공모 등 입상자에게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법」 § 112②4호차목)
 - ※ 현상공모에 응하는 행위가 역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에 직접적 · 구체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행정의 효율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함
- 교육감 · 교육의원이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표창시 부상 수여는 가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49③1호)
 -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
- 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참석 대상자와 실제 참가자가 전국 규모인 경우)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시상만 가능하고 부상은 불가능한 경우

- 읍 · 면 · 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 예술 · 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 수여(「법」 § 112②2호자목)
- 구 · 시 · 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 상장 수여(「법」 § 112②2호자목)
 - 다만,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함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상장 수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 방법 ·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상장 수여(「법」 § 112②4호가 · 나목)
 - 다만, 「지방공무원법」 § 79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시 부상 수여 가능

(8) 사옥준공식 등에서 금품 제공(「법」 § 112②제2호타록)

▶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 · 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 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9) 경조사에서 음식물 · 답례품 제공(「법」 § 112②2호파목)

▶ 「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 화갑 등 60세 이상의 수연이나 은혼식·금혼식·회혼례에 참석한 하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음식점 또는 음료(「규칙」 § 50⑥)

-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되는 것은 제외
- 식사류의 음식물
1인에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과 · 떡 · 김밥 등 다과류를 포함하여 식사용으로 제공되는 1만 원 이하의 모든 음식물을 말함
- 다과류의 음식물 및 음료
1인에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주류와 식사류를 제외한 다과 · 빵 · 떡 · 김밥 · 음료 등 간식용으로 제공되는 3천원 이하의 음식물, 차 · 커피 등 음료는 1천원 이하의 음료를 말함



다 기부행위의 예외 – 구호적·자선적 행위(「법」 § 112②3호)

(1)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 제공(「법」 § 112②3호가목)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의 예시

- 장애인복지시설 : 재활시설, 요양시설, 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 아동복지시설 :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조산시설, 선도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2) 재해구호기관·단체에 구호금품 제공(「법」 § 112②3호 나목)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3)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 등 제공(「법」 § 112②3호 다목)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4)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 구호금품 제공(「법」§ 112②3호 라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5) 자선기관 · 단체에 의연 · 구호금품 제공(「법」§ 112②3호 마목)

- ▶ 자선사업을 주관 · 시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언론기관 ·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혜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 금품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 · 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가능사례

- ▶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또는 중상이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훈의 달 · 설 · 추석 · 연말에 위문품을 보훈단체에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2005. 2. 7. 선관위 회답)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선사업을 주관 · 시행하는 사회단체(설립허가 여부 불문)에서 운영하는 연탄은행에 불우이웃 성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2006. 12. 27. 선관위 회답)
- ▶ 국군 · 전경 ·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에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행위(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연금품 ·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무방함

(6) 소년 · 소녀가장 등에 대한 후원(「법」§ 112②3호 바목)

- ▶ 자선 · 구호사업을 주관 · 시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 법인을 통하여 소년 · 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 · 구호금품 제공 행위는 무방함



(7) 국가기관 · 구호단체의 후원행사에 금품 제공(「법」 § 112②3호 사목)

-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 · 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 ·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돋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 · 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8) 근로청소년 대상 무료학교 운영(「법」 § 112②3호 아목)

-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는 무방함

라 기부행위의 예외 – 직무상 행위(「법」 § 112②4호)

(1)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법」 § 112②제4호가목)

가) 규정

-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 · 포상하는 경우 부상 수여 제외)
- ▣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제공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7. 7. 12. 2007도579, 대법원 2009. 12. 10. 2009도9925 등)
- ▣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서 말하는 ‘법령’이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목적이나 방향 등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함(서울고법 2006. 3. 23. 2005초71)

나) 사례

① 법령에 의한 표창 · 포상

가능사례

▶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에 의한 포상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의 규정에 따라 수립 · 시행하는 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공자를 표창 · 포상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 부상(상금)을 수여할 수는 없음

통합방위본부가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시달한 「'06 통합방위 지방회의 개최 지침 (지시 · 통보)」 및 동 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2006년 1월 시달한 「'06 통합방위 지방회의 개최지침 통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유공자를 표창(부상 제외)하거나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무방(2006. 2. 7. 선관위 회답)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직원 포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 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의 우수부서 포상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 또는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거나 직무수행 우수 부서(읍 · 면 · 동사무소 포함)를 선정하여 포상해 온 종전의 관례에 따라 통상적인 포상금(상장 포함)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

▶ 공익근무요원 포상시 특별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범공익근무요원 표창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표창에 따른 부상을 수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행정관서요원의 휴가) 및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2조의2(특별휴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부포상 전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포상(부상 포함)을 전수하는 것은 무방함

② 법령에 의한 보조금 지급

위반사례

☞ 사적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는 전전재정의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원칙적으로 기부 또는 보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을 금지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행사가 아닌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등산대회·야유회·관광모임 등의 사적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다만, 사적행사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종합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행사의 내용이 그 시책범위안에 들어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가능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하나,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에 개최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2005. 3. 29. 선관위 회답)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인 바, 풍수해 보험료를 상향지원하는 것이 「풍수해보험법」 제7조의 ‘일부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관청에서 판단할 사항(2006. 10. 20. 선관위 회답)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및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무방함

▶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농업경영인대회 · 체육대회 ·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행사 보조금 지원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개최되는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법」 제86조 제2항제4호에 위반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무방할 것이나, 동 보조금이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행사의 개최 후원이 금지되는 기간중에 개최되는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없음

▶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마을운동전진대회 행사 보조금 교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교부 등)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까지의 사이에 개최되는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위반됨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서예비엔날레 행사 예산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 보조)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무방함

▶ 자율방범대원 방한복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의 방한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따라 어린이 안심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그 가입비와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무방함



③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위반사례

▶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기준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가능사례

▶ 통계조사 응답자에 답례품 제공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수립·시행한 「지역통계 개발사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조사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시 조사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 지원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달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마을청소 참여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체험교육 실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수립·시달된 정부의 기본시책과 '국가의 제21'이라는 실천계획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환경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함

- 다만, 환경체험교육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전에 이르거나 일반선거구민에게 관광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거나 참석자에게 선물·기념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에게 식사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동 사업을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전문가 · 기술자 · 자원봉사자에게 간단한 식사 · 간식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안전문화 홍보물품 등 배부

소방방재청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 · 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 · 배부하거나 캠페인 참가자에게 간단한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출산 ·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정부가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시달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출산 ·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무방함

▶ 학생페스티벌에 참여한 학생에게 음식물 · 기념품 · 경품제공

주민자치위원회(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중앙행정기관의 기본시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음식물 · 기념품 ·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를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 114조에 위반됨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에서 개최하는 전국단위행사에서 행사성격에 맞게 참석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농촌일손돕기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의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의 새주소홍보용 우편수취함 보급

행정자치부가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시달한 ‘새주소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우체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새주소홍보용 우편수취함을 보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무방함



④ 기타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가능사례

- ▣ 지방자치단체가 「병역법 시행령」 제63조(행정관서요원의 직무교육)의 규정에 의거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그에 부수되는 통상적인 교통편의 및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의하여 무방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 또는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2004. 10. 26. 선관위 회답)
- ▣ 지역자율방재단에 모자 등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율방재단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모자 등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예산지원)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함
- ▣ 마을 이장에게 정보통신기기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하거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 마을 이장에게 정보통신 기기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 ▣ 청사 이전에 따른 소속공무원 이전비 지급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 ▣ 청사 이전에 따른 소속공무원 주택마련자금 이자보전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기관장의 의무)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문서로 합의한 경우 이를 이행하는 것은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제3항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공무원제안규칙에 따라서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함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순국선열의 날 · 설 · 추석에 농수산상품권 · 생활용품 등의 위문금품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에 따라 무방함

▶ 공영유료주차장의 무료주차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유료주차장을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함

▶ 무주택 독거노인에 대한 주택 무상임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같은 법 제7조(급여의 종류)의 규정에 의한 주거급여 등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무방할 것이나, 같은 법에서 정한 급여의 대상과 범위를 벗어나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법」 제114조에 위반됨

▶ 경로당에 명절 선물 등 물품을 지원하는 행위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 제2항 ·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부담) · 제24조(비용의 보조)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 · 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무방함

-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 · 부식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연말 · 설 · 추석 · 어버이 날 · 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 · 음료수 등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무방함

- 다만,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관광 여행시 여행경비나 과일 ·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등

특정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금품 제공행위, 생일선물 제공행위 등을 보건복지부 지침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선심성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것으로 봄

※ 연초 사업계획에 없거나 조례로 정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선물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음

▣ 공공근로사업으로 경로당 환경미화사업 등을 하는 행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없이 순수하게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내·외부를 청소하거나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동법 시행령 제10조(자활에 필요한 사업)·제20조(자활근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자활근로의 대상사업)에 따른 행위로서 무방함

⑤ 행사관련 금품제공 행위

위반사례

▣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기념품 제공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공동개최하는 행사의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개최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행위로 보아 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이며, 기념품 등에 제공자인 사회단체의 명의를 표시하더라도 공동개최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표창 시 꽃다발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정기표창 시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꽃다발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114조 등에 위반됨

▣ 연축제 참가자에게 연만들기 재료 제공

자치단체가 행사참가자에 대하여 무료로 연만들기 재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 다만, 민간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연만들기 재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장 이임식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임식에 참석한 초청인사에게 오찬 또는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가능사례

▶ 자원봉사자 교육 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범위안의 교통편의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로서 무방함

– 다만,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제한기간에 교통편이나 숙식제공이 필요한 정도의 행사성 교육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됨

▶ 엑스포 행사장 운영인력 교육시 식사 등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엑스포 행사장 운영인력(도우미, 자원봉사자)을 대상으로 발대식 · 교육을 실시하면서 발대식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비 · 숙식비를 제공하거나 행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은 행사에 부수된 행위로서 무방함

▶ 행사진행요원에게 일회용 우의 또는 근무복 제공

강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사진행요원에게 우의를 지급하거나, 행사진행 공무원에 대한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등 행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은 행사에 부수된 행위로서 무방함

▶ 체육대회에 참석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식사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정기적인 소속직원 체육대회에 참석한 소속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음악회 참석자에게 홍보용 수돗물을 등 제공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개최하는 태교음악회에 참석한 임산부 등에게 홍보용 수돗물을 제공하거나, 민간단체로부터 협찬받은 우유·방석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됨이 없이 협찬사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사회단체를 후원하는 행사에서의 기념품 제공

행사참석자에게 기념품·경품·음식물 등을 제공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이 경우 기념품 등에 후원명의를 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될 것이나, 현수막·팸플릿에 단순히 후원명의를 표시하는 것은 무방함

▶ 지방문화원의 양로연의에 참석한 노인에게 식사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문화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방문화원이 '양로연의'를 개최하고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서울메트로(지방공사)의 수송인원 300억명 돌파기념 기념승차권 제공

서울메트로가 수송인원 300억명 돌파에 대한 직원위로 및 이용고객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기념승차권 30,000매를 발행하여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전에 이르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밝혀 또는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음

▶ 세금 cashback 제도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으로 납세 고지를 받고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개인납세자에게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당해 납세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세금 cashback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⑥ 수당 · 실비 제공

위반사례

▶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자 여비지급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임원 개인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가능사례

▶ 통 · 리 · 반의 장에게 수당 기타 실비를 제공하는 행위

「통 · 리 · 반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통 · 리 · 반의 장에 대한 수당 기타 실비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라기 보다는 본연의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무방함

▶ 통 · 리 · 반의 장에게 신문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상여금 · 수당 · 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통 · 리 · 반의 장에게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자치행정 자문 요원 등에게 수당 기타 실비를 보상하는 행위

지방자치행정과 관련하여 위촉된 자문교수단 · 모니터요원 등에 대한 회의개최 시 수당 기타 식사 · 교통비 등 실비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간 균형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회의 개최에 수반된 행위로서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 대표선수 여비 지급

전국 또는 시 · 도단위 체육대회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관용차량 또는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따른 격려금품의 제공으로 보아 무방함



⑦ 여행 · 견학경비 지원

위반사례

▣ 외국인주부 친정나들이 사업에 항공료 등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부 친정나들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선발 대상자에 대하여 항공료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가능사례

▣ 소속 공무원 등의 해외 배낭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소속 공무원이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 등에 따라 배낭여행 등 공무상 국외여행시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실비 보상적 행위로서 일방적 금품제공 행위로 볼 수 없어 무방함

▣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 포상을 수여하면서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함

▣ 청소업무담당공무원 ·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공무원에 대하여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및 「환경미화원 노 · 사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함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선정 후 폐기물처리시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 시설견학을 하는 행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주변영향지역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접영향권과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 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

내의 간접영향권을 말함)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시설 견학을 하는 경우 그 견학이 주민설득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무방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 구성기준 및 기능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여 동법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제1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선진시설견학을 실시하는 것도 무방함

※ 주변영향지역 외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진시설 견학을 실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 농촌주민 국내외 현지견학 경비지원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달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농촌주민 교육(국내외 견학)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함

▣ 한인회 주관 불우 모범청소년 해외견학 지원

한인회가 저소득 불우 모범청소년에게 선진문화를 접하여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저소득 불우 모범청소년 미국 견학’에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또는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자원봉사자 공로연수 실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3조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날(매년 12월 5일) 및 자원봉사 주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행사로 우수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무방함

⑧ 차량지원 등 교통편의 제공

위반사례

▶ 지역축제 관람객에게 교통편의 제공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가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됨

가능사례

▶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원

노인복지센터의 온천욕프로그램 또는 수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시 노인들의 이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 ·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비용의 부담) · 제24조(비용의 보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아 「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함

▶ 단위학교 체험학습활동에 관용차량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과 교육기회 부여를 위해 ‘도농교류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위학교에 학부모들의 경비부담 감소와 학교예산 절감을 위해 교통편의(버스제공)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함

▶ 노인건강교실 참여노인에게 관용차량 제공

노인건강교육을 위한 교육장까지의 이동이 현저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불가피하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에 부수된 행위로서 무방함

※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이·통장에게 이·통장연합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014.8.11 선관위 회답)

▶ 청사방문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상시 금지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청사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지방의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에게 당해 지방의회 명의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다만, 지방의원이 직접 제공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 광역단체의 조례에 의한 기초단체의 장수노인 금품지급행위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관내 시 · 군이 장수어르신 지원금품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그 지원 금품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시 · 군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아니 하더라도 무방함

▶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한 신생아 · 전입세대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신생아 · 전입세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2) 구호행위 · 자선행위(「법」 § 112②제4호다목)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 · 자선행위

가능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노숙인을 대상으로 저축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시상(상금 포함)하는 것은 노숙인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 · 자선행위로 보아 「법」 제1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무방(2008. 3. 7. 선관위 회답)

- ▣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노인복지시설(무료양로원)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화성열차 체험행사(무료 체험 및 식사제공)을 실시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무방(2008. 7. 23. 선관위 회답)
- ▣ 결식자 · 무의탁 노인 · 노숙자 등에게 무료의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행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구호행위 · 자선행위로서 무방함
- ▣ 무의탁 노인, 소년 · 소녀 가장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설 · 추석 · 연말 또는 관련 기념일(아버지 날 · 노인의 날 · 어린이 날 · 보훈의 달 등)을 맞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의례적인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구호행위 · 자선행위로서 무방함

(3)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 관련 음식물 제공(「법」 § 112②제4호라목)

- ▣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 · 직원, 유관기관 · 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 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범위(「규칙」 제47조⑤)

1.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4. 한국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 · 도 조직 및 구 · 시 · 군 조직을 포함)
8. 법령 ·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9.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

(4) 긴급현안 해결 목적의 금품 제공(「법」 § 112②제4호마목)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긴급한 현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함(「규칙」 § 50④)

(5) 환경미화원 등에게 위문품 제공(「법」 § 112②제4호바목)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 · 효부 · 모범시민 · 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 · 구두미화원 · 가두신문판매원 ·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6) 국회의원 등의 무료민원 상담(「법」§ 112②제4호사목)

-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 행위는 무방함
 - ※ 무료법률상담을 하거나 변호사 기타 전문직업인을 당사 등에 배치하여 민원상담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금지

(7) 전문직업인의 무료민원 상담(「법」§ 112②제4호아목)

- ▶ 변호사·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는 무방함

(8) 달력 배부 등 행위(「법」§ 112②제4호자목)

- ▶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 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가능사례

- ▶ 지방자치단체가 달력을 제작하여 읍·면·동사무소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소유하는 공공기관·시설에 배부·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구안의 유관기관·단체·시설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내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2001. 12. 27. 선관위 회답)

(9) 채무 이행 행위(「법」 § 112②제4호차목)

- ▣ 물품구매 · 공사 ·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가능사례

- ▣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홍보용 책자에 게재하는 등 업무에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사진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역무에 대한 대가 제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우수 작품 제출자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
 - 다만, 단순한 행사성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때에는 부상 수여 불가
- ▣ 행사의 진행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진행요원이나 행렬 등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게 행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2005. 8. 25. 선관위 회답)
- ▣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촉된 객원기자 · 시정홍보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개최 시 수당 기타 식사 · 교통비 등 실비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 균형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선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2007. 3. 22. 선관위 회답)
- ▣ 자원재활용 아이디어 공모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재활용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라 무방함
- ▣ 랜드마크(landmark) 소재 공모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개선, 도시브랜드와 경쟁력 제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랜드마크를 공모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상장 및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라 무방함
- ▣ 도심 재정비사업 국제 현상 공모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심의 재정비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모를 실시하고 입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상금을 제공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으로 무방

▶ TBS TV서울의 시민 영상 공모전

서울시 신하 교통방송이 개국한 케이블TV 채널인 ‘TBS TV서울’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민제작 영상물을 공모하고 우수작품에 대하여 상패 및 통상적 범위 안에서 상금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의 규정에 따라 무방

▶ 민방위 표어 · 포스터 · 수필 공모

지방자치단체가 표어 · 포스터 · 수필 등 작품을 전시 등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표창하는 경우에는 우수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는 있으나 상금을 수여할 수는 없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행정에 직접 활용하기 위하여 또는 주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을 고취하고자 현수막·입간판 등에 활용할 표어·포스터 등을 현상공모하고 우수작에 대하여 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제공으로 볼 수 있음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제4항 운용기준

● 직무상 금품의 제공방법

- 법령 · 조례에 따라 확대 변경하는 등의 행위

법령 ·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한다면 종전의 대상 · 방법 · 범위 · 시기 등을 확대하거나 변경하거나 새로 제공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른 행위와 조례에 따른 행위 간 차이가 없음

- 법령 · 조례에 따르지 아니한 직무상의 행위인 경우

제112조제2항제4호다목(구호 · 자선행위) · 라목(초도 · 연두순시) · 마목(긴급현안) · 바목(위문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품을 제공하는 때에는 종전의 대상 · 방법 · 범위 · 시기 등을 확대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 제공할 수도 없음. 이 경우 확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변경행위는 행위 양태에 따라 추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 지원,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마목)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직무행위는 종전의 범위로 보아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12조제2항제4호에 열거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가 현재 참석하고 있는 장소 또는 행사에서 제공하더라도 일정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추정되는지 여부는 각 행사의 성격, 금품의 종류 · 가액, 제공 동기와 방법, 관행, 발언내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그 밖의 행위

제112조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법」 제112조제4항)

※ 이 경우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거나, 해당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소속·하부행정기관의 행위와의 관계

- 「지방자치법」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합대표권) 및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통합·관리·집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결정되고 표시되므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를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될 것임
- 제112조제2항제4호에 열거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4항과 앞 페이지 “직무상 금품의 제공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하는 경우”를 참고하여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6장에 규정된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봄
※ 교육청,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로 보지 아니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인 도립·시립대학이 학칙에 따라 총장명의로 행하는 금품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함

●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的 운용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법률과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만을 의미함. 예컨대 “주민의 복지증진”,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등이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의 근거를 규정한 것일 뿐, 이와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려면 별도로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위도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됨.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본시책의 범위를 벗어나 제공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금품 기타 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아니함

마 기부행위의 예외 – 기타 법령에 따른 행위(「법」 § 112②제5호)

- ▶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가능사례

- ▶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시립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것은 무방
- ▶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무방(2003. 4. 10. 선관위 회답)

기부행위 관련 판례

- 기부행위로 인정한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지방선거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달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갑자기 교회를 찾아가 담임목사의 서재에서 은밀하게 십일조 명목으로 1억을 현금(2007. 7. 26. 대법원 판결 2007도2636)
 -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가입한 후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150만원을 야유회 경비로 부담(2005. 1. 13. 대법원 판결 2004도7360)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에 대비하여 상당한 득표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직능단체 임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향수를 선물(2004. 4. 27. 대법원 판결 2003도6653)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윷놀이대회 및 하계수련회행사에 금품을 제공(2004. 2. 13. 대법원 판결 2003도1100)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기존 인원에 2배나 많은 인원을 초청하고, 세미나 장소를 쇼·공연·목욕 등의 위락이 제공되는 건물 내에서 개최하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대접, 위락시설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1997. 4. 8. 대법원 판결 96도2716)
 -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 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1997. 12. 26. 대법원 판결 97도2249)
 - 정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 공직선거에서 도와줄 사람들 20명의 모임을 직접 주최하여 지지를 부탁하며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2004. 3. 12. 대법원 판결 2003도3570)

- 입후보예정자가 아파트부녀회의 노인회원 관광행사의 출발지에 찾아가 부녀회장에게 15,000원을 찬조(1999. 6. 7. 대법원 판결 99도1690)
 - 농협조합장인 후보자가 농협에 노인대학을 개설하고 조합경비 180만원으로 노인대학생들에게 민속촌 관광을 시켜주면서 출발장소에 나가 노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수료식장에서도 인사(1996. 5. 10. 대법원 판결 96도620)
- 기부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 제공(1999. 10. 22. 대법원 판결 99도2971)
 - 가스총전소를 경영하는 후보자가 구정전 택시기사들에게 시가 3,500원 상당의 선물 세트 배포(1996. 5. 10. 대법원 판결 95도2820)
 - 출어 준비 중인 어선에 친지나 이웃들이 풍어를 기원하는 뜻으로 술을 배에 실어주는 지역 풍습에 따라 후보예정자가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언행없이 어선 3척에 맥주 각 1박스씩을 실어 준 행위(1996. 3. 26. 대법원 판결 95도2985)



6

기타 제한 · 금지행위

가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법」 § 57조의2③, § 57조의6)

(1) 입법취지

-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내부적인 일로서 당현이나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해져야 하지만,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당내경선운동의 파급효과가 일반선거구민에게 미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선거법에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 특히, 공무원 등 본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2) 당내경선 선거인

-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 57조의2③)

(3) 당내경선운동 금지행위

- ▣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57조의6①)
 -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57조의6②)

(4) 벌 칙

- ▶ § 57조의6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255①)
- ▶ § 57조의6②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255③)

나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1) 선거운동 금지 기관 · 단체(「법」§ 87)

- ▶ 다음의 기관 · 단체(그 대표자와 임 · 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기관 ·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87①)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 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등(후보자+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 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 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 · 단체
-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 동우회 · 향우회 · 산악회 ·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 · 설치할 수 없음(§ 87②)

(2) 유사기관 설립 · 설치 금지(「법」 § 89①)

▶ 누구든지 「법」 제61조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 후원회 · 연구소 ·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설치 가능함

(3) 관련사례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및 선거관련 활동 가능범위

▶ 대한의사협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음
(2002. 5. 31. 선관위 회답)

▶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2004. 3. 29. 선관위 회답)

▶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노동조합은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다른 한편 정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비록 「법」 제87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5. 1. 28. 2004도27)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축산업협동조합이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정책방향을 선거공약 등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건의한 사실과 채택된 경우의 그 채택 사실을 중앙회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기관지·내부문서를 통하여 구성원에게 통지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무방함(2000. 3. 27. 선관위 회답)
-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또는 매니페스토평가단과 공동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결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다른 제한기간(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이 아닌 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함이 없이 공약추진과 관련있는 자나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2007. 7. 2. 선관위 회답)

나) 법에 위반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입후보예정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에 지역적인 연고가 없는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지난 선거시에 선거조직을 관리해 오던 자들과 공모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산악회 명칭, 간부진, 산악회원의 모집방법 등을 의논하고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주부들로 이루어진 발대식 참가자 약 500여명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산행을 하면서 산악회 발대식을 거행하였다면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것임(대법원 2005. 3. 11. 2004도8715)
- ▶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 호소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산악회’라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그 산악회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아침운동 등을 나온 선거구민을 상대로 인사를 하는 등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대법원 2005. 9. 15. 2005도2246)
- ▶ 단체의 위법한 선거운동

군농민회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및 지지후보 결정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속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는 「법」상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된 단체라고 하여도 위법한 선거운동방법에 해당(대법원 2002. 3. 12. 2001도6511)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위해 동창회 사무실 이용

후보자가 동창회 회장과 공모하여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후보자의 선전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로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는 한편 앞으로의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하였다면 위 동창회 사무실은 유사기관에 해당(대법원 1999. 5. 25. 99도675)

- ▶ 산악회·축구회 등 사무소를 국회의원의 사무소에 설치하여 그 회원들이 수시로 출입 할 수 있는 연락거점으로 삼고 읍·면·동 지회를 구성하는 행위

- ▶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4) 벌 칙

- ▶ 부정선거운동죄(§ 255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90)

(1) 규 정

가) 주체 : 누구든지

나) 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 · 풍선 · 간판 · 현수막 · 애드벌룬 ·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하는 행위

▶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 ·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 판매하는 행위

※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라) 예외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 시설물 ·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90② 1호)

▶ 의례적, 직무상 · 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90②2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규칙」 § 47조의2)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규칙」 제47조의2제1호>
 - 정당(정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 등”이라 함)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
 -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평가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 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 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 직무상·업무상 행위 <「규칙」 제47조의2제2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에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행위 〈「규칙」 제47조의2제3호〉
 - 민속절 · 국경일 그 밖에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 · 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 · 기관 · 단체 · 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 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정당 또는 기관 · 단체 · 시설의 장의 이 · 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 · 단체 · 시설 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 · 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행위
 - ※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 · 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에 위반됨

(2) 관련사례

위반사례

- ➡ ‘희망돼지’라는 돼지저금통은 광고물 또는 선전물에 해당

돼지저금통의 본래 용도가 가정 등 일반 공중이 볼 수 없는 장소에 비치되어 돈을 모으는데에 사용되는 것이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배부한 이른바 ‘희망돼지’라는 이름의 돼지저금통은 「법」 제90조의 광고물 또는 제256조제2항제1호아목의 선전물에 해당(대법원 2004. 4. 23. 2004도1242)
- ➡ 시국강연회 · 세미나 · 학술대회 · 등반대회 · 자연보호활동 등 각종행사를 빌미로 후보자의 직명 ·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 귀성환영 현수막 게시

추석인사 등의 명목으로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 · 성명을 게재한 귀성환영 현수막을 입후보예정선거구 안의 다수인이 왕래하는 역, 버스터미널,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 또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법」 제254조의 규정에 저촉될 것임(1996. 10. 9. 선관위 회답)

- ▣ 민속절·국경일 기타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기타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정당명 또는 후보자의 직명·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는 행위
- ▣ 지역현안 성사와 관련하여 단체 혹은 개인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감사 또는 축하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가능사례

- ▣ 지방자치단체가 명절 구성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함(2005. 3. 8. 선관위 회답)
 -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벗어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 ▣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3) 벌 칙

- ▣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256③)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법 § 93)

(1)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

※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 정책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첨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
- ▶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봄)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가능

(2)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

- ▶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 신문 ·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 ▶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가능

(3) 상시금지

-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 · 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 ·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 · 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4) 관련사례

위반사례

- ▣ 사무소·영업소 등의 개소·이전 기타 행사 고지를 명목으로 초청장·안내장 등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을 표시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행사의 내용과 목적에 맞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직·성명(사진 제외)이 게재된 초청장·안내장을 거래처·유관기관·단체 등에 발송하는 것은 가능
- ▣ 후보자, 정당의 대표자·간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인사장을 보냄에 있어 의례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당원 모두에게 발송하는 행위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
- ▣ 기관지·사보,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부각시키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 ▣ 각종 동창회·친목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후보자의 지지·추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 입후보예정자 성명과 지지 호소내용이 포함된 연하장 발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성명과 “병술년은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발송한 것은 「법」 제93조에 위반(대법원 2007. 2. 9. 2006도7417)
- ▣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편향기사
자신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주간지역신문에 특정인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적격자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업무의 범위를 넘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대법원 1992. 2. 25. 91도3176)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 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또는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저자인 서적 판매광고를 하는 행위
- ▣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 시장·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 내용 등이 포함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대법원 2009. 9. 10. 2009도5457)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군민회 회원 1,015명에게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7. 2. 9. 2006도7417) ⇨ 징역 8월

▶ 학교동문회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문회가 ○○○을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성명서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11. 3. 10. 2010도16942) ⇨ 벌금 200만원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감사서한

선거일 전 180일 전에 행사진행에 협조·지원한 기관·단체·주민대표 등 제한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의례적인 감사 서한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발송대상·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에 이르거나, 선거일 전 180일 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를 밝혀 발송하는 때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성년축하 서한

의례적인 내용의 성년축하 서한문은 「법」 제8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 홍보물이 아니므로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는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나타내어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성년이 되는 일반주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법」 제93조에 위반됨

▶ 「수도법」에 의한 「수돗물품질보고서」에 인사말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법」 제31조에 따라 발간·제공하는 수돗물품질보고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 발행횟수·내용 등이 통상적인 보고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또는 사진을 게재하여 발간·배부하는 때에는 「법」 제93조에 위반됨

※ 법령에서 직접 사업계획이나 추진내용 등을 관계주민 등에게 고지·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침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가능사례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 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 후보자가 되려는 변호사의 현직 및 사진,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법무법인 사무소를 방문하는 손님, 의뢰인, 지인, 유관기관 관계자와 변호사가 영업상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 다만, 선전구호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 ▶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서한문 발송
 - 18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집단행동, 소송, 물리적 방해 등 주민과 오랜 갈등을 겪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제공 및 주민설득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 무방함
 - ※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나타내어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은 「법」 제93조에 위반됨

(5) 벌 칙

- ▶ 부정선거운동죄(§ 255②)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마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법」 § 95①)

(1) 공직선거법 규정

- 가) 금지주체 : 누구든지
- 나) 금지기간 : 상시



- 다) 금지행위 :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제시·첩부하는 행위
- 라)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252③)

(2) 관련사례

위반사례

- ▣ 겉기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하는 기사가 게재된 유료 잡지 1,500부를 기념품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배부한 행위(대법원 2008. 8. 11. 2008도4492) ⇒ 벌금 100만원

가능사례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배부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지지호소 등이 포함된 경우는 위법

바

타연설회·각종집회 등의 제한(「법」§ 101, § 103)

(1)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의 회의 개최(「법」§ 103②)

- ▣ 선거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주민자치 위원회는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

(2) 단합대회·야유회 개최(「법」§ 103③)

-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3) 반상회 개최(「법」 § 103④)

- ▶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음

(4) 타연설회 등의 개최(「법」 § 101)

-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

(5) 관련사례

위반사례

- ▶ 의정보고회장에서 제3자의 지지 발언

의정보고회장에서 지구당운영위원장이 축사를 하면서 “이△△ 의원은 십여년 동안 ○○동 빌라에 전세로 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발언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대법원 2004. 12. 10. 2004도6450)

- ▶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시민단체가 특정후보자를 낙선대상자와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특정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불법유인물 배포,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것은 위법(대법원 2002. 2. 26. 2000수162, 대법원 2004. 4. 27. 2002도327)

- ▶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 소개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면, 이는 그 집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에 상관 없이 선거법이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대구고법 1992. 10. 24. 92노533)

- ▶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례행사인 회원단합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선거기간 중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및 연탄(쌀) 나누기 행사나 시·군 새마을 수련회를 개최하는 행위

(6) 벌 칙

- ▶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256①③)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103②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101, § 103③④ 위반)

사

출판기념회

(1) 공직선거법 규정(「법」 § 103⑤)

가) 금지주체 : 누구든지

나)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금지행위

-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본 조의 규정이 적용되나 후보자의 가족이 후보자와 무관하게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 ※ 출판기념회 개최금지기간에는 개최대상·장소를 불문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 ※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게시·설치하는 현수막이나 시설물의 규격 또는 수량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후보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제한함

라) 벌 칙

-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256③)

(2) 관련사례

위반사례

- ▣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판매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혀위 사실이 포함된 서적을 출간하거나 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저서의 내용과 무관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출판기념회 참석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행위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저서를 제공하는 행위
-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가, 전문가 수준의 미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는 행위
- ▣ 서적판매를 위한 신문광고에 출판기념회 일시·장소를 포함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참석하도록 고지하는 행위
- ▣ 서적에 특정지역 개발 등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게재하여 사실상 선거홍보물화하는 행위
- ▣ 제3자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다가 다른 참석자인 선거구민 5명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수필집 5권을 무료로 배부한 행위(대법원 2007. 1. 17. 2006도7815) ⇒ 벌금 150만원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이 게재된 초청장을 선거구민이 포함된 1,845명에게 발송하고, 선거구민 150여명에게 초청장을 직접 배부한 행위(대법원 2007. 1. 17. 2006도7815) ⇒ 벌금 150만원

- ▶ 초청장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약력 뿐만 아니라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를 게재하였으며, 약 1,500여명이 참석한 출판기념회의 규모에 비하여 그 수가 과도한 50,000 여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고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12,000 여통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7. 8. 23. 2007도3940) ⇒ 별금 300만원
- ▶ 출판기념회 초청장 봉투에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가능사례

- ▶ 서적의 표지에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하여 서적을 출간하거나 판매업자가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판매해 오던 방법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 출판기념회 개최(선거일 전 90일 전)
 - 출판사 등이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서적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유명인사 및 가수, 연예인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에서 단순히 사회나 행사 진행을 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저서 내용에 포함된 저자의 약력·소개글 또는 저서의 주요내용을 동영상으로 상영하는 행위
 -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는 행위
 - ※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축가를 부른 경우 그들에게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교통비, 오찬 및 다과를 제공할 수 있음.
- ▶ 현수막·포스터 등 게시 범위
 - 출판기념회 주최자명·일시·장소 등 통상적인 행사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개최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 ※ 다만,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화·초청장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 서점 등이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신간서적 안내 포스터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주최자명·일시·장소 및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 안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초청 인사가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후보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평전을 제3자가 출간(출판기념회 개최 포함)하는 행위

※ 다만, 특정후보자 지지호소의 내용 포함 또는 선거공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서 출간은 위법

아 기 타

(1)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 금지(「법」 § 239)

가) 금지주체 :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 포함)

나) 금지행위 : 직권을 남용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다) 벌 칙 :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239)

(2)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에 대한 방해 금지(「법」 § 240②)

- 가) 금지주체 :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 관리 포함)
- 나) 금지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제작·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는 행위
- 다) 벌 칙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240②)

(3) 투표안내문 부정 작성 등 금지 (「법」 § 240③)

- 가) 금지주체 :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 나) 금지행위 :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투표안내문을 부정하게 작성·제작·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다) 벌 칙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240③)

(4) 선거인명부 허위기재 금지 (「법」 § 247②)

- 가) 금지주체 :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 있는 자
- 나) 금지행위 :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행위
- 다) 벌 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47②)



(5) 투표 위조 · 증감 금지 (「법」 § 249②)

- 가) 금지주체 :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 ·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포함)이나 종사원
- 나) 금지행위 : 투표를 위조하거나 증감하는 행위
- 다) 벌 칙 : 위반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49②)



II

「정당법」 · 「정치자금법」 상 제한규정

1. 정당가입 금지
2. 후원회 가입 및 후원금 기부 금지

1

정당가입 금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 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 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 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 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 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가 입법 취지

▶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나아가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통하여 공무집행에서의 혼란의 초래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를 수호하려는 목적을 가짐 (헌법재판소 2014. 3. 27. 2011헌바42 결정)

나 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 국회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 국·공립 대학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

▶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신분·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라는 등으로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하며⁸⁾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이 있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8) 1991.1.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다 관련 사례

(1)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경우

▶ 대통령특별보좌역

「대통령특별보좌역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특별보좌역은 신분에 관한 별다른 규정 없이 대우를 장관 또는 차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원이 될 수 있음
(1995. 1. 27. 선관위 회답)

▶ 미수복지의 명예시장

미수복지 명예시장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음(2002. 8. 6. 선관위 회답)

▶ 사립대학 총장의 당직 겸임

사립대학 총장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원은 정당의 당직을 가질 수 있음
(1999. 10. 8. 선관위 회답)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임·직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임·직원이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음(2000. 1. 28. 선관위 회답)

▶ 한국은행의 임·직원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2000. 8. 22. 선관위 회답)

▶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지방공기업의 직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음(2001. 8. 13., 2001. 9. 28. 선관위 회답)

▶ 이북5도 중앙도민회의 회장

이북5도 중앙도민회 회장은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 및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음
(2002. 9. 30. 선관위 회답)

▶ 통·리장

통·리장은 당원이 될 수 있으므로 당원으로서 당원단합대회 등 정당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음(1998. 5. 1. 선관위 회답)

(2) 정당가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의 입당 가능 여부

국회의장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비서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2007. 2. 2. 선관위 회답)

※ 「정당법」 제22조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 국회의장의 비서실장 등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북5도지사

이북5도지사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정당의 당직을 가질 수 없음

※ 현행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이북5도지사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

▣ 국무총리 공보실장

국무총리 공보실장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음(1998. 3. 14. 선관위 회답)

라 별 칙

▣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경우(「정당법」 § 53)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2

후원회 가입 및 후원금 기부 금지

「정치자금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입 배경

- ▶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 확보를 통하여 공익을 추구하고,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공하며,
- ▶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대화의 중재자 내지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임

나 규정 내용

(1) 후원회 가입 및 후원금 기부

- ▶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정치자금법」 § 3)
 - 연간 기부한도액은 2천만원, 후원 회원은 연간 1만원 이상 의무 기부
 -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으로 기부 가능

- ▶ 「정당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정치자금법」 § 8)
-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국가공무원법」 § 65, 「지방공무원법」 § 57)
- ▶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2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9)
- ▶ 일반 공무원은 후원회원이 될 수 없으며(「정치자금법」 § 8),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 불가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후원회 가입 가능
 - 국무위원이 아닌 처의 장, 차관, 정무차관은 후원회 가입(×), 후원금 기부(○)

(2) 기탁금

- ▶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정치자금법」 § 3)
- ▶ 일반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선관위에 기탁금 기부 가능
 -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100 중 다액 이하

다 관련 사례

(1) 위반사례

- ▶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됨(2005. 11. 7. 법제처 유권해석)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2005.11.7.)

1. 질의

-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2. 회답

-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됨

3. 이유

-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면서도 그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고,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자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준 등을 확립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법령인 바, 공무원의 정치자금의 기부 가능여부는 「정치자금법」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헌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 및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장 등의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보를 통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을 추구하고,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공하며,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대화의 중재자 내지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임
- 한편,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정치자금법」 제3조)로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행위가 허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할 것임

※ 現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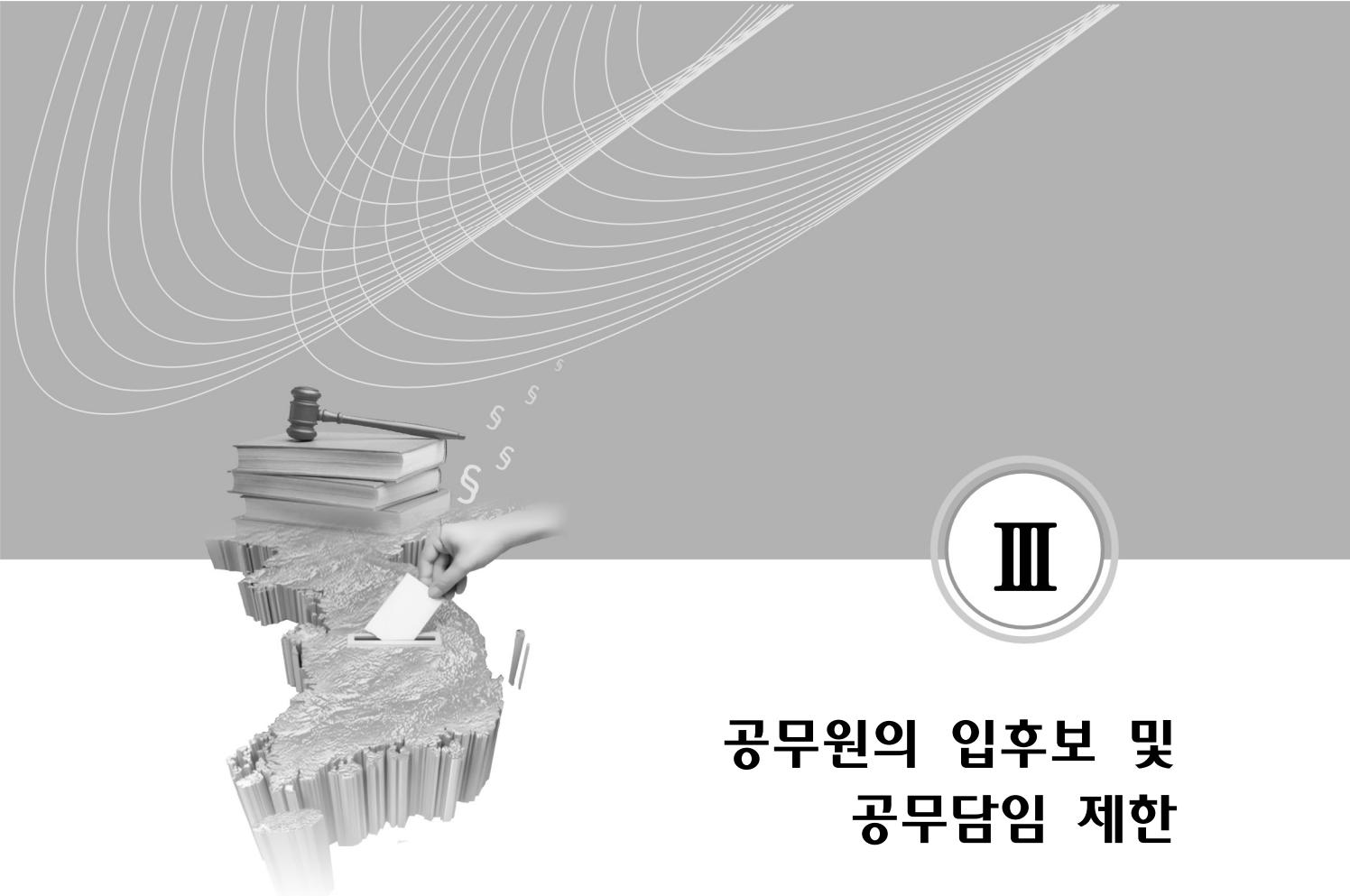
(2) 가능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의 기탁금 기탁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및 일반직 공무원이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정치자금법」상 없음(1999. 7. 6. 선관위 회답)

※ 2005. 8. 4. 「정치자금법」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음. 따라서 공무원이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함





III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1. 공무원 등의 입후보
2.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

1

공무원 등의 입후보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 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 · 도조직 및 구 · 시 · 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간 별 사직 대상

(1)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법」 § 53⑤)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는 제외

(2)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 (「법」 § 53①)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가능하나,
 - *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국회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 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국·공립대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
- 정무직 공무원(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은 사직 대상임
 - * 단, 정무직공무원도 아래의 경우에는 직을 가지고 입후보 가능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당해 지방의원·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신분·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라는 등의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하며, 공익법무관·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등이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총장~조교수는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의 대표자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때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법」 § 60조의2④2호)

(3)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법」 § 53②)

-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후보자 등록신청 전 사직(「법」 § 53③)

-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5)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 가능(「법」 § 53①)

-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시기의 판단기준

- 사직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봄(「법」 § 53④)



나 관련 사례

- ▶ 입후보하기 위한 사직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도 사직기한의 말일인 공휴일까지 사직하여야 입후보가 가능(선관위 홈페이지)
- ▶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사직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원이 접수된 경우 사직원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를 그만 둔 것으로 보아 입후보가 가능(선관위 홈페이지)
- ▶ 명예퇴직의 경우, ‘명예퇴직원이 접수된 때’를 사직시점으로 봄(2012. 2. 17. 선관위 회답)
- ▶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병되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1997. 10. 23. 선관위 회답)
- ▶ 입후보를 위한 사직기한인 선거일 전 90일에 응당하는 날(4.5.)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4. 5.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임(1998. 3. 30. 선관위 회답)
- ▶ 직무대행 지방자치단체장인 부구청장과 부군수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임(1998. 4. 15. 선관위 회답)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은 입후보 제한을 받는 언론인에 해당되지 아니함(2004. 2. 13. 선관위 회답)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집행간부가 그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서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2004. 2. 20. 선관위 회답)

2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 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가 입법취지

▶ 선거법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상실시키는 것만으로는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아 일정한 선거법죄로 인하여 100만원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특정한 공직에 취임 또는 임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

나 제한주체 및 내용

▶ 대상 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죄(§ 230~§ 233), 당선무효유도죄(§ 234), 선거의 자유 방해죄(§ 237~§ 239), 벽보 그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240), 투표의 비밀 침해죄(§ 241), 투·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242조), 공무원의 재외선거 사무 간섭죄(§ 242의2), 투표함 등에 대한 죄(§ 243), 선거사무관리관계자·시설 폭행교란죄(§ 244),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245),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246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 247), 사위투표제(§ 248), 투표위조·증감죄(§ 249), 혀위사실공표죄(§ 250), 후보자 비방죄(§ 251),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252), 성명 등의 혀위표시죄(§ 253),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254), 부정선거운동죄(§ 255), 각종제한규정 위반(§ 256①~③),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죄(§ 257),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258), 선거법죄선동죄(§ 259),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정치자금법 제49조)

▶ 형량 및 제한기간

- 징역형 선고를 받은 자 :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 :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 :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 선거범죄로 인하여 취임 또는 임용이 제한되는 직

- ▶ 「국가공무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함
-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공중보건의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10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언론인
-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구·시·군조직 이상 대표자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 사립학교 교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참고

1. 공무원 등의 행위기준 일람표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주요 행위금지
3. 관계 법령

참고 1

공무원 등의 행위기준 일람표

		①정당, 후원회 가입	②선거 운동	③지위, 직무상 행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④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⑤입후보시 사직	⑥선거법의 공무담임 등 제한적 해당여부
공무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	X	X	X	○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	○	X	○	○	○
	자치단체장	○	X	X	X	○	○
	국회공무원*	○	○	X	X	X	X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	○	X	○	X	X
	일반공무원	X	X	X	X	○	○
	국공립학교	○	○	X	X	X	○
		X	X	X	X	○	○
일반인	공익법무관·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X	X	X	X	○	○
	외국인·19세미만· 선거권 없는 자	X	X	X			
	선관위원·교육위원	X (공무원인 경우)	X	X		○	○
	정부지분 50/100 이상 공공 기관(한국은행 포함) 상근임원	○	X (직원 포함)	X	X (직원포함)	○	○
	농·수협·산림조합·연합회· 생산협·상근임원·중앙회장	○	X (직원 포함)	X		○	○ (직원포함)
	지방공사·공단·상근 임원	○	X (직원 포함)	X	X (직원포함)	○	○
	사립학교	○	○	X		X	○
			X	X		○	○
	대통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X	X		○	○
	예비군·중대장이상·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	X	X	X	X	○
	국민운동 3단체 상근 임직원· 구사군단위 이상 조직의 대표자	○	X	X	X	○	○
	선상투표 선장	○	X	X	X		

*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국회 상임위·예결특위·윤리특위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국회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② 선거운동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법 60①4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 가능

⑤ 입후보시 사직 :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장) 선거에 입후보 시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가 가능

⑥ 선거법의 공무담임 등 제한적 : 기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원, 방송통신심의위 위원 등 포함

참고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주요 행위금지

① 상시제한

주 체	내 용	근 거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9 §85①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중처벌) ·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60① §85② §57의2
공무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되고자 하는자 포함)의 업적 홍보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발표 	§86① 1~3호
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사무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그 밖의 광고 출연 ·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주례 포함) 	§86⑦ §113①
누구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종교적·직무상 행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없는자에 대해 교육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85③ §85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외곽단체 등의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87②

* 공무원(국회의원, 그 보좌관·비서관·지방의회의원 제외),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정부보유 지분 50/100이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등

②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 ('17. 3. 10. ~ 5.9.)

주체	내용	근거
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강·정책, 주의·주장 홍보·선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 정당의 창당·합당·개편·후보자 선출대회는 참석 가능 	§86② 2~3호
단체장 (소속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리·반장회의 참석(천재·지변·재해, 집단·긴급민원 발생 시 참석가능)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86②5호 §86②4호

가능한 행위(법 §86②4호, 규칙 §47②)

-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개최·후원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개최·후원
-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 민원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행사 개최·후원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③ 선거기간 중 제한 ('17. 4. 17. ~ 5.9.)

주체	내용	근거
공무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 	§86① 5~7호 §103④
국민운동 단체	· 일체의 모임 개최	§103②
누구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101 §103③

참고 3 관계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제 7 조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41 조

-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67 조

-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116 조

-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④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7.3.9. 법률 제14571호]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 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 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 · 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 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 · 사망 ·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 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 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정당의 정강 · 정책과 주의 ·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 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 · 합당대회 ·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 정견 ·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 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 · 후원하는 행위
 - 나. 특정일 ·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다. 천재 ·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 복구를 위한 행위
 -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 · 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 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 · 리 ·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삭제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 · 소식지 · 간행물 · 시설물 · 녹음물 · 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 · 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 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②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진열·계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 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 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첨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 신문 ·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 · 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 ·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 · 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95조(신문 · 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 통신 · 잡지 또는 기관 · 단체 ·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 · 살포 · 게시 · 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 살포 · 게시 · 첨부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 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삭제

-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 ④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 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11. (삭제)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 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 라.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사.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 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자.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카.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타. 제5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 파.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거.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 ·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 · 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 · 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 ·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 · 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 · 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 · 설 · 추석 · 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 시설의 개소 · 이전식, 합동 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 기관 · 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 · 합당대회 · 후보자 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 · 화분 ·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 · 방법 등을 확대 · 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마. 친목회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등 각종 사교 ·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 ·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 성당 · 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현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 · 후보자 · 예비후보자가 관할 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아. 기관 · 단체 · 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 · 단체 · 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 · 단체 · 시설의 대표자 ·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 · 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 · 단체 · 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 · 설 · 추석 · 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 · 단체 · 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자. 읍 · 면 · 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 예술 · 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 · 시 · 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 · 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 카.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 · 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 · 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 타.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 · 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파.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담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 · 자선적 행위
-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돋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 라.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 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② 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116조(기부의 권리·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리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선장 · 입회인에게 금전 · 물품 · 차마 ·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 · 사회단체 · 종교단체 · 노동단체 · 청년단체 · 여성단체 · 노인단체 · 재향군인단체 · 씨족단체 등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금전 ·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 · 동창회 · 친목회 · 향우회 · 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 물품 · 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 ·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 ·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의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 ·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의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② 정당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 소장 ·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 · 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 · 권유 ·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⑧ 제7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 특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3.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자
 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어깨띠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6. 제80조(演說禁止場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한 자
 7.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8. 제81조제7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9. 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12.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자
 13.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
 14. 삭제
 15.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나 사진을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16. 제105조(행렬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
 17.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18.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19. 제10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서신·전보·모사전송·전화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협박하거나 하게 한 자

20. 제218조의14제1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의3제1항제4호 후단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한 자

1의2.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제60조의4제1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같은 항을 위반하여 1종을 넘어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같은 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1의3. 제64조제1항·제9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2. 삭제

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4.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계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첨부·살포·계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6.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7. 삭제

8.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중지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계재를 의뢰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 ④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 토론회)제6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 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제81조제6항 · 제82조제4항 · 제113조 · 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 정당의 대표자 ·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 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 · 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리 · 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 · 권리 · 알선 ·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제9항제1호 ·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68조(공소시효) 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④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 2017.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60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① 삭제

② 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2.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3.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③ 삭제

④ 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2. 각종 통계·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 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5.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6.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⑤ 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4. 한국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 · 도 조직 및 구 · 시 · 군조직을 포함한다)
8. 법령 ·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9.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

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등을 위하여 시설물등을 설치 · 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정강 · 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 · 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등”이라 한다)을 중앙당과 시 · 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 · 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마목에서 같다.

나. 삭제

다.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라.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 · 전화번호 · 정책구호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 마.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바.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폄기 위하여 정강 · 정책의 설명회 · 토론회 · 강연회 (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한다)를 개최하면서 현판 · 현수막을 주최 당부 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사.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아.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 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한다)를 달고 다니는 행위

2. 직무상 · 업무상 행위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 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에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 · 현수막을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 · 문화 · 체육 · 예술 · 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다.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112조제2항 제4호사목에 따른 사무소 또는 장소에 그 직명 · 성명과 업무 및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 마. 삭제

3. 의례적인 행위

- 가. 민속절 · 국경일 그 밖에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 · 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 · 기관 · 단체 · 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를 표시한 간판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나. 정당 또는 기관 · 단체 · 시설의 장의 이 · 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나 기관 · 단체 · 시설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 · 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① 삭제

②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과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가족(가족의 범위는 법 제10조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예비후보자

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5인

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0인

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인

2. 국회의원 : 10인.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수로 한다.

③ 법 제112조제2항제4호라목에서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의 “긴급한 현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는 상설사무소 또는 임시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모두 합하여 1개로 하며, 같은 날에는 이동하여 설치할 수 없다.

1. 천막

2. 주차된 자동차

⑥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 범위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로 한다.

⑦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허용되는 사항과 금지되는 사항에 관한 주요사례등을 방송·신문·통신·잡지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정 당 법

[일부개정 2016. 1. 15. 법률 제13757호]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 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㊂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016. 3. 3. 법률 제14074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당비
 - 나. 후원금
 - 다. 기탁금
 - 라. 보조금
 - 마. 정당의 당현 ·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 ·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 · 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이를 기부로 본다.
3.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현 · 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4.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5.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6.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7. "후원회"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 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8. 공직선거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후원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회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의 자격과 후원금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④ 범죄수사를 위한 회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3호]

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및 제84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현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④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 · 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④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83호]

-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畫)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 조직 ·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 · 편집 ·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 도서 · 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실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 · 완장 · 복식 등을 제작 · 배부 · 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㊂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타법개정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0호]

제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 조직 ·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 편집 ·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 도서 · 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 · 완장 ·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 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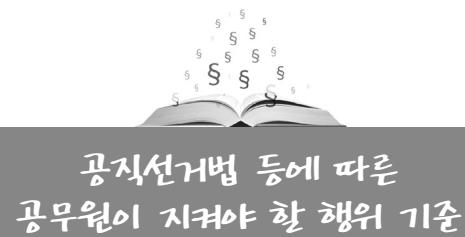
ⓐ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2. 7. 10 대통령령 제1766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쳐의 장
6. 각 원·부·처의 차관
7. 삭제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인 쇄 : 2017년 3월

발행일 : 2017년 3월

발행처 :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Tel. 02) 2100-3855, 3856

Fax. 02) 2100-4298

